

자료

B/2-1-12

SAd.a.12

반 보벤 교수 초청 세미나 자료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종로구 안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2호)

전화 : 763-9633/4(F)

반 보벤 교수 초청 세미나 자료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한 국 정 신 대 문 제 대 책 협 의 회

(종로구 언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2호)
전화 : 763-9633/4(F)

차 례

1. 「종군위안부」 39명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와 정의와 인권에 대한 호소..... 2
/ 윤정옥
2. 일본의 전쟁책임은 끝났는가?13
-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의 기소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박원순
3. 종군위안부, 강제연행문제와 유엔40
-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문제 해결방식의 제안 -
/ 도츠카 에츠로
4.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 50
/ 디오 반 보벤(Theo van Boven)
5. 위안부 연표57

「종군위안부」 39명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와 정의와 인권에 대한 호소

윤 정 옥 공동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47년이 되지만 우리는 「종군위안부」에 대하여 별로 아는 바가 없다. 우리가 「종군위안부」라고 말할때 우리는 일선에 끌려갔던 여성들을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성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마쓰시로, 가시와, 다테야모, 야나기모도 등 군사비행장 공사가 진행중이던 곳에도 있었고, 광산에도 있었다. 지금까지 이들의 수는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군대 주위나 광산이나 군수공장에 저들의 힘아래에 두기 시작한 시기는 「종군위안부」를 무엇이라 정의내리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중국 동북에서는 일본군대가 1933년에서부터 「종군위안부」를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문서가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1917년 경 불췌비키 혁명이 한창일 때 일본이 소만국경에 일본군을 출병시켰을 때 일본군 상대의 창녀였던 「가라유기」중에는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조선여성들이 끼어 있었다. 「가라유기」란 일본의 가난한 집 딸이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창녀로 팔려나간 여성을 말한다. 일본군대가 성병감염 방지에 대해 그렇게 엄격했던 것은 시베리아 출병때에 싸워서 죽은 군인수 보다 성병에 죽은 군인 수가 많다고 할 정도로 성병에 피해를 보았던 경험에서 부터일 것이다. 또한 16세기에 이미 있던 공창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이 발굴해 낸 모든 자료에 대해 언급할 시간이 없다. 이 보고는 우리 협의회가 특히 정신대연구회가 조사한 「종군위안부」의 증언을 기초로 작성한 조사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우리 협의회에는 살아계신 분으로는 47명의 「종군위안부」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8명의 기록은 조사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처음 도표 여섯은 8명을 뺀 39명을 조사했다. 그 후 이들 중에서 다시 27명을 상대로 최종조사를 했다. 「정신대연구회 회원들의 지루하고 잔인하다고 생각되는 5,10회에 걸친 질문에 참을성 있게 응해 주신 「종군위안부」들과 정신대연구회 회원들의 성의있는 수고에 감사드린다.

[도표 1]

현연령	수
83	1
82	
81	
80	
79	
78	
77	1
76	1
75	3
74	
73	5
72	3
71	1
70	2
69	3
68	1
67	6
66	2
65	4
64	1
63	
62	3
기타	1

[도표2]

연행당시연령	
28	1
27	
26	
25	
24	
23	1
22	1
21	1
20	1
19	2
18	4
17	8
16	7
15	4
14	
13	2
12	1
기타	5

[도표3]

연행 년도	
1933	1
34	
35	
36	1
37	3
38	2
39	4
40	2
41	6
42	6
43	3
44	2
45	1
기타	7

[도표4]

연행 都	
함남	1
경기	3
서울	2
충북	1
충남	1
경북	4
경남	9
전북	4
전남	4
기타	9

[도표 5]

연행 수단	
강제	13
속임	19
자원	1

* 완전강제

여복실(낮잠자고 있는데), 문필기(빈 집에 동생들과 있는데) 할머니의 경우.

- 강제연행 당한 사람 중에는 장을 보고 장바구니를 든 채 색출되어 꼼짝못하고 나가게 된 경우가 있음.

* 강제와 속임

황금주 할머니의 경우: 천황의 이름으로 미혼

(아버지가 징용을 당해 대신 정신대 지원)	
기타	5

너 모집한다. 군수공장에 취직시켜 줄터니 가야 한다.
* 강제
윤두리 : 부산에서 서촌 피복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정신대 나갈까봐 초량의 장갑공장으로 옮기려고 갔다 오는 길에 부산진역 앞 남부경

찰서에서 잠깐 오라고 해서 들어가니 처녀가 4명이 있고, 11시쯤 되어 차가 와서 헌병 2명이 5명을 싣고 부두쪽으로 감.

강덕경 : 도야마깡 후지코시 공장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도망했다가 헌병에 잡혀 그 헌병에게 강간당하고, 군인부대에 가 위안부가 되어 다시 큰 군인부대 위안소에 배치당함.

문옥주 : 길을 가는데 헌병이 강제로, 헌병 사무실 의자에서 그 날 밤을 새고 다음날 또 한 처녀와 함께 2명을 그 헌병 인솔하에 위안부로 가게 됨.

* 속임수

하점언 할머니의 경우 : 일본 언니네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어 울었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한국에 데려다 주겠노라고 데려감. 일본에 있는 공장, 야전병원에서 간호와 잡일도 함.

[도표 6]

위안소 소재지	
이 동	6
중국 동북부	8
중국 중부	5
중국 남부	1
파푸아뉴기니	1
라바울	
미안마	3
티평양	1
라이왕	3
한국	1
일본	6
기타	2

[도표 7] *이하 27명 통계 [도표 8]

학 력	
국교 고등	1
과 중퇴	
국교 졸	2
국교 중퇴	8
교회 야간	3
학교	
무	12
기타	1

현 주 소	
서울	10
부천	1
인천	3
대전	1
충북	1
대구	2
경북	1
부산	3
경남	3
전북	1
전남	1

[도표 8]

데려간 사람	
일본헌병	2
일본군인	5
동회.면.리 관리	1
동회사람+일본인	1
조선인+계급장	
없는 누런옷 입은 일본인	1
조선사람	7
일본군속	2
일본경찰	1
경찰과 군인	2
조선사람+일본인	3
일본인	1
기억안남	1

이런 사람들이 데려다 집합장소에 모이면 총을 든 일본군인 아니면 헌병의 무서운 감시가 시작되었다.

집합장소에서 배나 기차를 탔다.

[도표 9]

위안소 경영인	
군	10
일본 민간인	10
일본 군속	1
조선민간인	5
조선 군속	1
장교개인집(●)	1
알 수 없음(#)	1
잘 모름	5

이 문제는 극히 파악하기 힘들.

위안부가 군속이었다 하더라도 일본군이 권위를 주기 위해 군복을 입혔을 지 모른다.

식사시중을 하는 사람이 민간인 이었을 때도 위안소의 경영과 전책임이 일본군에게 있었을지 모른다.

여기서는 「위안부」가 파악한대로 통계를 냈다.

● 김경순 할머니의 경우 히로시마의 장교 개인집

식사시중은 일본여인이 했음. 그러나 경영인 알 수 없음.

[도표 10]

위안소에서 불리운 이름	
일본 이름	21
번호	2
한국이름을 일본식 발음으로	1
기타	4

노청자는 첫번째 위안소에서는 27번으로 두번째 수용소에서는 기요꼬라고 불렀다. 그래서 인원수가 28명.

[도표 11]

입 소 요	
돈	7
딱지	2
군표	5
없음	4
기타	9

위안소에 따라 경영방법이 달랐다. 입구에서 돈을 내면 딱지를 주어서 그 딱지를 위안부에 주면 위안부가 그것을 모아 다음날 아침에 입구에 접수시켜 전날의 다녀간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흔히 있는 방법이었다.

알아들 것은 위안소가 군의 수입원인 지역이었다는 사실이다. 1주에 1회, 아니면 1월에 1회, 2회 위안소에서 책임군대에게 보고를 했다. 군에서는 위안소에서 세금을 거두었다.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는 군

이 발행한 「特別賣錢稅免除票」를 주든지 사령부에서 발행하였다. 그 번호가 8337호까지 발급된 증거물이 있다.

문필기가 있던 위안소에서는 그래프를 그려 부채총고 성적이 나쁜 위안부를 징계하고, 배죽간이 있던 위안소에서는 블라우스 앞에 빨간 천을 달아주고 성적이 좋은 위안부에게는 벌을 달아주며 위안부 사이에 계급을 만들었다. 미안마에서는 성적 좋은 위안부에게 상을 주어 무리를 해서라도 군인을 많이 받도록 몰아갔다.

「위안부」가 현지에서 받은 보수.

박옥련의 경우 : 1개월에 한 번 계산해서 조금씩 받음. 나머지는 우체국에 입금한다고 함. 귀국할때 통장을 준다고 함. (라바울)

하점연의 경우 : 海南島 明月館, 간동, 스마트라 멘단 등 본인이 올린 수입이 1할이 수입인데 먹고 입고, 화장품 사면 돈은 없다. 후에는 위안소를 군이 장악하면서 지금까지 6(위안소):4(위안부)였던 것을 빛의 고저와 기간의 장단을 막론하고 4:6으로 할당을 바꾸기도 함. 스마트라에서는 은행에 입금을 많이 함. 3,4백엔 줌.

길갑순의 경우 : 전혀 돈을 받은 일 없었는데 아들을 낳은 후부터 장교들이 현찰을 주기 시작. 이외에는 전혀 돈을 받은 일 없다고 함.

유곽에 가까운 운영방법과 군이 직접 운영한 위안소가 있는 듯 함.

그러나 어떤 운영방법이건 마지막 결정적인 권한은 군이 가지고 있었던 듯 함.

위안소에 상대한 시립의 수

중국 동북부 위안소에서 최일례의 경험은 없는 날도 있고, 많을 때는 15명, 적을 때는 5,6명, 많을 때는 15명. 평균 20-30명이었다.

제일 많이 상대한 경우는 미안마와 중국 길림의 경우로 60명까지. 많은 경우 문앞에 줄을 서고, 5분 이내에 일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밖에서 야단. 따라서 들어오면 각 반을 풀 시간도 없었음. 바지를 내리고 줄을 서 있는 경우도 있음.

폭격

거의 전원이 처음에 거부하다 구타당함.

이상옥의 경우, 파라오에서 군사훈련중 칼로 가슴과 팔을 찔림. 경영인은 손을 받으려고 구타, 손은 말을 들으라고 구타. 흥칙한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자고 하여 말을 안들으면 구타, 도망하려다 잡혀 옷을 벗기고 거꾸로 매달고 물먹이고, 등에 당근질 함. 지금도 그 흉터가 있음. 일본에서는 옛부터 공창에게 가하는 처벌로 옷을 벗기고 거꾸로 매달고 구타하는 관례가 있다고 함.

술먹고 와서 칼을 때 휘둘러서 죽을 걱정하고 덤벼들었더니 칼을 떨구어서 그 칼로 군인 가슴을 찌름. 군사재판 받았으나 무죄 석방. 술을 먹고 와서 하라는 대로 안하면 발로 차고 칼을 때어 다다미에 꽂아놓고 맘대로 함.

부산 영도 위안소에서 도마하다 잡혀 총부리로 세대 맞음. 이로 인해 영치뼈가 골아서 썩었는데 손님을 받음. 파라오에서 폭격에 도망중일 때도 강간함. 이때 입술을 들렸는데 지금도 흉터가 있음.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갈 때 구토증이 있어 갑판에 올라가 있는데 인술인이 와서 죽도록 구타.

[도표 12]

콘돔사용 여부	
사용함	18
안함	3

콘돔사용 안한 중에도 다이왕 위안소로 특공대가 오는 위안소와 규슈의 장교를 받던 위안소가 있음.

콘돔을 사용한 길림위안소는 처음 위안부가 도착했을 때 한 15일쯤은 장교들이 왔었음.

그 후 질병 등 시간에 따라 받음. 콘돔을 사용안한

군인마음대로	4	15일 동안에 위안부들이 임신을 많이 함.
기타	2	

[도표 13]

성 병 검 진	
없음	3
있었음	3
한주에 한번	11
한달에 2,3번	1
한달에 1번	2
한두달에 두번	1
한달에 두번	2
기타	4

[도표 14]

임 신 여 부	
했음	2
안했음	25
아들을 둘 낳음 6,7개월째 사산	

[도표 15]

성 병 감 염	
성병감염 경험 있음	8
없었음	19

[도표 16]

위안소 사용시간	상대자	상대자
7:00 A.M - 4:00 P.M 9:00 A.M - 5:00 P.M 9:00 A.M - 3:00 P.M	졸병	아침 4시에 일어나 청소시키는 위안소 아침 7시에 일어나 청소시키는 위안소 아침 7시에 아침먹는 위안소
4:00 P.M - 7:00 P.M 5:00 P.M - 8:00 P.M 3:00 P.M - 7:00 P.M	하사관	
7:00 P.M - 10:00 P.M 10:00 P.M - 12:00 P.M 7:00 P.M - 10:00 P.M	장교	
장교는 긴 밤이라고 해서 자고 가기도.		

[도표 17]

급 료	
졸 병	1명 50전, 하안표(2명)
하사관	2명, 어떤 곳은 파란표 (2명 50전)
장교	2명 50전, 어떤곳은 붉은표 (3명)
긴 밤	3,4명, 8명
낮에는	1명
긴 밤	3명

긴 밤은 장교만 잘 수 있었음.
낮에 받는 1명은 어느 계급인지
수 없음.

일본 어느 위안소, 앉아만 있다가 가는 사람, 국부를 보고 닦아주고 가는 사람, 이 사람도 믿지 못해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했음. 이런 사람 중 어떤 장교가 패전 전에 귀국시킨 모양(김경순)

특공대였던 군인은 내일 나가면 자기는 죽는다고 자기 사진, 세면 도구 일제를 갖다 줌. 전에 두번 온 일 있는데 성병을 옮겼는데 선물로 가져간다고 함. 노래를 가르쳐 줌. 전사했는지 다시 안음(이용수)

어떤 군의관은 16세의 M위안부를 일년 쉬게 하고 돈을 자신이 위안소에 내고 자신이 M을 동정, 병원관사에 가서 밥하고 청소하고 모든 가사를 시킴. M은 그 군의관을 지금도 은인으로 생각(문필기)

17세의 K위안부는 일 장교가 자기 숙소로 부름, 친절히 해 줌.

1940년에 돈 100원을 주어 동료 4명을 함께 구국시킴. K가 작고 앓고 전쟁이 심해져서 위험하다고(김순덕)

위안소에서의 생활

어떤 경로로 언행됐던, 일단 인솔자가 인솔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무서운 감시 시작. 대부분 위안소에 도착하면 다다미 2장 반 크기에 배채되고 이후 외출의 자유가 없었다. 길갑순과 김경순의 경우에는 건물 안에서 화장실 갈때만 방에서 나갈 수 있었음. 거의가 내의는 불필요한 상태

외출을 나갈 때는 경영인의 허가를 받고 여럿이서 갔음

폭격이 있어 산으로, 방공호로 도망할 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방공호에서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음.

[도표 18]

해방후 결혼, 동거여부	
한 일 있음	17
안했음	9
무답	1

[도표 19]

자녀 유무	
있음	8
없음	17
대답없음	2

[도표 20]

[위안부]의 수입		
없음	23	
있음	현금	1
	통장	1
	팁	2

23명중 한 사람은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 뒤 1개월에 30엔씩 받았음.

대가를 받은 사람도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여 받았는지 기록에 없음. 숙소, 밥, 옷, 화장품 값 등을 제하고, 야전 우체국에 저금한 통장을 귀국시 받았으나 배가 어뢰에 파손하는 바람에 통장을 잃었음. 위안소 쪽에서 준 것이 아니고 군인이 위

안부에게 준 것. 이것을 모아 야전우체국에 저금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 문옥주의 경우이다. 文原吉子라는 이름으로 히로시마 우편국 대장이 있다.

[도표 21]

위안부의 일	
군인빨래, 취사, 목욕탕에 붙이는 일 국방부인회 어깨띠로 군인이 싸우러 나갈때 일장기를 들고 배웅나감. 풀을 땀. 싸움이 있는 다음 날 총알치를 모음	6
군사훈련	1
술좌석에서의 시중과 환대	2
간호원 일, 병원 빨래	1

현지에 갈 때까지 도중에서 수용당했을 때 발일. 먼저 온 사람들을 위한 취사	2
기타	15

대부분이 13세부터의 어린 소녀였던 「종군위안부」는 속아서 또는 폭력에 의해 끌려갔다. 작은 방에 갇히어 엄격한 감시 밑에서 이들은 일본군인을 상대하게끔 강요당했던 것이다. 문밖에는 일군이 차례를 기다리고 줄을 서고 있었다. 소녀들은 영양부족이었다. 이들은 중국동북부의 혹은 태평양 섬의 기후에 적응할 수 없었다. 이들은 하라는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반항했고, 그리고 허가 빠지도 록 맞았다.

무엇보다 이들은 수치심을 이길 수 없었다. 어떤 이는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 버리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시퍼런 바닷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뛰어들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이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발견되었을 때의 그 수모와 고문을 생각하여 시도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일반적으로 일본군인은 「종군위안부」를 「센비」라고 불렀다. 「센」은 조선을 멸시해서 하는 일본말이고 「비」는 중국말로 여성의 국부를 가르키는 말이다. 일본군대에게는 조선여성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선 여성은 자기들의 충동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짐승이나 물건이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결코 과거에 지나간 문제가 아니다. 이 분들은 지금 살아 있다. 병주머니로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파괴되지 않았으면 버려져 가지고,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서 존재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대되는 두 성이 가장 가까웠던 관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기는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사랑의 열매로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성이 가장 비인간적으로 잔혹하게, 악하게 사용되었을 때에 이보다 더 상대방을 모멸하고, 파괴하고, 그 사람의 뼈속까지 짓밟을 수 없다. 위안소에서는 임신하면 낙태를 해야 했다.

「종군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이었다는 데에 있다. 일본이 이 문제를 성의있게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종군위안부」는 「자빠유」¹⁾라는 다른 모양의 「종군위안부」로서 그리고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를 위한 생활기금 등을 거론하고 나선다.

주) _____

1) 「자빠유기」, 태국이나 필리핀 등 아시아 여러나라에서 가난한 집 여성들이 취직시켜 준다는 핑에 빠져 일본으로 간 후 매춘을 강요당하게 된 여성을 말한

우리 협의회는 「종군위안부」들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보상은 우리가 요구하는 배상의 한 항목으로서의 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가해국과 피해국의 문제 그리고 여성학적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본인은 이 문제를 인도와 인권의 문제로서 취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알게 되었으니 「종군위안부」의 자존심과 이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야 하는 일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임무인 줄 안다. 이 임무는 아래와 같이 우리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7항목에 대해 배상하므로써 다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종군위안부」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2. 진상의 공표
3. 이 사실에 대해 당사자들과 조선과 한국인과 해당되는 아시아 여러나라에 사회
4. 정신적 물질적 배상과 보상
5. 추모비나 「종군위안부」자료관 건립
6. 역사교과서를 정정하고 젊은 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것.
7. 책임자에 대한 처벌

주)

다. 과거에는 일본여성들이 「가라요기」(居行)라는 이름으로 외국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외국여성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전쟁책임은 끝났는가?

-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의 기소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박 원 순 변호사

제 1 장 서 론

1-1. 세계 제 2차 대전후 일본의 전쟁범죄에 관한 처벌과 희생자들을 위한 배상 정책

(1) 일본의 전쟁범죄 재판의 간략한 분석

국제군사재판소(IMT)의 착안은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에 의해 고려되었다. 그 후 1945년 7월 26일 포츠담(POSTDAM)선언과 1945년 12월 26일 모스크바회의에서 진전을 보았다. 그것은 드디어 태평양 지역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제기한 선포 제 1항에 의해 1946년 1월 19일에 설립되었다. 그 재판소 국동의 주요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즉각적인 재판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창설된 것이다.

뉴렘버그(NEUREMBERG)에서 열린 국제군사법정 폐막후 약 6개월이 되었을 때 IMT는 도쿄에서 공판을 갖도록 추진하였다. 28명의 전 일본 수상들, 각료들, 군사령관들이 그 재판소에 출두되었다.

동경재판소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뉴렘버그 재판을 위해 설립된 재판소와 현장의 동양판이라고 볼 수 있다.

몇몇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이 덜 중요하다고 보는 B, C급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소들이 있었다. 필리핀 정부는 169명의 일본 범죄자들을 재판했고, 133명을 유죄판결하였다. 야마시타 장군과 호마 장군 외에 90명이 미국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마리아나를 비롯한 다른 태평양섬 전투지에서 미국군이 지휘한 다른 재판들을 통해 총 113 유죄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태평양 전쟁에 가담한 다른 연합군들도 일본밖에서 전쟁 재판을 열었다. 1945-46년 사이에 중국의 민족주의자 재판소는 504명의 일본인을 전쟁범죄자로 유죄판결하였다. 같은 기간에 프랑스는 198명을, 네덜란드는 969명을, 영국은 811명을,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644명을 유죄판결하였다.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의 상황은 나치 전쟁 범죄자들과 비교될 수 있다. 가장 현저한 대비는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은 충분히 조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경 재판소는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만큼의 주목을 끌

지도 못했다. 나치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조직에 가담했거나 개인으로 관여했거나 기소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인간성에 위배되는 범죄에 대해서 일본자신이 처벌한 적은 없다. 대부분의 경우, 특히 B, C급 전쟁범죄 재판들은 연합군으로부터 온 전쟁포로들에게 행해진 포악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집중하였다. 다른 한편 그 재판의 진행은 뒤에 우리가 보게 되듯이 희생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은 무시된 채 연합군들의 주도아래 집행되었다.

(2) 일본정부에 의한 배상

일본정부에 의해서 행해진 세계 제 2차 대전에 대한 책임을 위한 배상정책은 희생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그 정책은 몇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배상금액은 일본정부의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인데, 세계 1차 대전 후 패망한 국가들의 상황을 조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배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파산한 것이다. 둘째로, 배상문제는 수용국가들과 협상하면서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금액과 시간과 지불방법을 포함한 조건들은 일본정부와 수용국가들 사이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일방적인 부과로 된 것이 아니다. 셋째로, 요청된 배상방법은 현금지불로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배상받을 국가에 생산품과 기술자 훈련제공 등으로도 지불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특징을 볼 때 명확한 것은 배상정책이 일본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산품이나 기술제공에 의한 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배상받는 국가들이 일본의 경제질서에 종속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필연적으로 희생국가들은 그들의 경제난국 때문에 신속히 일본과 배상협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나아가서 관련된 거의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그러한 협정이 자기 국민들의 동의없이 이루어져 버렸다. 그 예로서 1965년 한국과 일본정부 사이에 만들어진 기본협정은 보상청구의 마지막 포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파급된 격렬한 시위진압 후에 서명되었다. 그 과정과 협정내용 두가지 모두 국면의 배상문제를 미해결로 남겼다.

마지막으로 그 배상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집행되었을 뿐 개별적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것은 관련된 국가들 사이에 논쟁과 갈등의 씨를 남기게 되었다.

1-2. 최근 '위안부' 문제와 민간절차 의존

(1) 고난의 소리는 아직도 일본과 아시아에 출몰하고 있다.

"오늘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거나 그것의 중요함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나를 당황하게 한다. 전쟁범죄자의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 잊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짓들도, 더러는 세계 제 2차 대전동안 저지른 일본의 만행을 희미하게 기억한다. 남경의 강간, 바탄(BATAAN)죽음의 행진, 전쟁 포로들, 그리고 시암-버마 죽음의 철로길과 콰이강의 다리를 건설한 다른 노예 노동자들."

세상은 과거에 일본이 저지른 모든 사건과 잔악행위들을 어느덧 잊어버렸는가? 비극적인 과거 대신에 일본의 눈부신 번영이 우리 눈을 멀게 했는가? 아직도, 아시아 도처에서 고통에 찬 소리를 듣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중국정부는 1972년 일본에 대한 모든 보상청구를 취소했다. 그러나 30만 중국인들은 전쟁시 만행에 대하여 2천억불 까지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제노동, 중국 '위안부'이용, 의학실험들, 재산파괴 등을 포함해서다. 일본배상을 위한 비정부 중국 민간위원회가 형성되었고, 개인들은 그들이 '아키히토 황제'의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 11월에 한국의 여성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조직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그토록 끔찍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협약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첫째로 가장 중요한 요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본군의 관여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반세기나 지난 이번 1월이었다. 일본은 처음으로 정부의 관여를 인정했는데 그 때 중요한 정부기록이 한 대학 교수에 의해 발견되고 폭로되었다."

(2) '위안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아직도 아시아에 남아 있는, 그리고 일본정부를 성가시게 하는 고통의 소리를 명확하게 듣는다. 그들 가운데 '위안부'문제는 최근에 공개되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들의 강제종군에 체계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이는 몇몇 결정적인 기록들의 출현이 있기까지 그 존재자체를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당연히 희생자들은 수치스럽게 느꼈고, '위안부'로서 그들의 경험을 표출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 침묵이 그 비극을 오래동안 땅 밑에 묻어두는 것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알려지자 여러나라에 있는 많은 '위안부'들이 말하게 되었다. 희생자들의 외침소리와 보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침묵했다. 이 문제가 1992년 2월 인권위원회의 기간에 국제교육개발에 의해 유엔에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그 문제를 채택했고, 반 보벤 씨를 이 문제 연구를 위한 특별 보고자로 임명하였다. 많은 '위안부'들과 활동가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위안부'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거의 20만명의 아시아 소녀들과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2차 대전동안 일본황군에 의해 유괴되었고, 엉뚱한 곳으로 보

내져서 '성노예'로 이용당했다. 기록들은 일본황군이 '위안부'들을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도 끌고 간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성과가 없었다 할지라도 '위안부'문제가 즉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괴이하고 잔인한 인권침해의 형태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근 50년동안 미해결로 남아있었던 전범자들과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재고하는 동기가 되었다.

(3) 기소의 서두름과 그 가능한 결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민간단체가 만든 요구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정부와 천황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기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개별 희생자들과 한국, 그리고 한국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성 노예로 강제징용된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에게 전면적이고 납득할 만한 완전한 공개사과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은 신고를 한 소수의 여성들에게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얼마간의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많은 이들을 포함하여, 한국여성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인정한다는 뜻에서 국가대 국가간의 경제적 배상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

2. 일본정부는 한국정부 및 관련 국제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정신대 문제의 모든 측면에 걸쳐 가능한 한 모든 사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상의 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3.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증언할 의사가 있는 일본국민들이 보복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 주어야 한다.

4. 일본정부는 '위안부'생존 피해자들에게 완전하고도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일본정부는 모든 '위안부' 여성들을 추모하고, 후세에 여성 및 타국 국민들의 인권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교육시키기 위하여 일본내에 합당한 추모비를 건립하여야 한다.

6. 일본정부는 모든 교과서를 수정하여 한국 국민에게 가한 식민지적 억압의 일부로서 '위안부'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여성의 성적 예속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일본이 이처럼 엄청난 장기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관련사실을 지속적으로 은폐해 온 것에 대하여 엄중 항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에 명시된 요구의 단 한가지 조항도 인정하거나 묵인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2차 대전의 한국 희생자들과 '위안부'생존자들을 포함한 일

본 점령당시 희생자들은 그들의 사건을 일본법정에 내놓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일본정부가 보상책임을 인정할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음 연대표는 1990년 이래 한국 희생자들에 의해 고소 제기된 민사소송 사건들과 요구 사항들을 보여주는 최근 기록이다.

1990. 10 희생자들과 태평양 유족회 가족들은 책임확인, 공식적인 사과, 실종자 조사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동경지방법원에 소송 제기했다.

1991. 1 정산근 씨는 추락군인과 부상자 유족을 위한 구제법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에 소송제기했다.

1991. 1 석성기씨는 일본의 사회복지 장관을 걸어 소송제기했고, 그는 위의 법에 의해 부상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1991. 4 진석일 씨는 석성기씨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1991. 7 제암리의 유족들은 보상의 법적 의무와 사과를 확인하기 위해 동경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1991. 8 한국 원폭피해자회는 미쯔비시 중공업에 원폭 투하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연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다.

1991. 8 사할린에 있는 레니드 대학살 사건의 유족들은 동경지방법원에 보상받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1991.11 2차 대전 때 강제복무했던 한국의 B,C급 전범자들은 동경 지방 법원에 사과와 연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1.12 한국군인, 군속들 그리고 위안부들은 동경지방 법원에 사건을 접수시켰다.

1992. 4 6명의 한국위안부들은 동경 지방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였다.

위안부들 사건중 그 첫번째가 1991년 12월에 나왔다. 가장 전형적이고도 중요한 사건은 심미자 여인을 포함한 6명의 위안부들의 소송이다. 심미자 여인은 47년간의 침묵끝에 1992년 2월 후쿠오카에서 '성노예'로서의 생생하고 비극적인 경험을 상세히 말했다.

결론적으로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런 종류의 민간절차를 통해서 보상이나 배상의 실제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실망스럽게도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일본 재판소들은 이미 여러번 그러한 신청을 기각시켜 버렸다. 그 예로서 일본 고등법원은 전쟁중에 일본제국 군인으로 참전했던 대만인에 의해 기소된 소송사건을 1977년 8월에 시작된 후 15년만인 1992년 4월에 기각시켜 버렸다.

더 나아가서 유감스럽게도 "그 침해후 47년이 지났어도 일본의 국내법 체계안에서는 위에 언급한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은 개인 희생자들, 특히 일본황군에 의해 노예화된 희생자들의 곤경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유

보상의 전망이 없다.”

희생자들과 그들을 위한 활동가들이 주로 경제적 보상의 논쟁에 의지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상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 것은 진실일지라도 그들의 명든 가슴을 치유하기에는, 그리고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채우기에는 족하지 않다. 때로는 일본인들로 하여금 희생자들과 그들의 국가가 하는 시위의 목적이 돈의 문제로 오해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강조할 점은 돈으로 하는 보상이 때로는 유교에 깊은 영향을 받은 아시아인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상문제가 이 분야에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해결책을 도출해 내야 하는 이유이다.

1-3.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현재 기소의 필요성과 가능성

(1) 처벌의 필요성

A. 서구의 맥락

세계 2차 대전동안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점점 더 늙어가고 있고, 죽을 날이 몇해 남지 않았다. 유럽국가들에 있어서 대중의 중요한 부분은 감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기소진행을 중지할 때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지구 전체를 통해 나치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 졌었고, 그들은 독일 영토 안팎에서 계속적으로 기소되었다. 우리는 아직도 유럽 어느 곳에서나 기소사태들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에서는 수색과 재판들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새롭게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국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그것이 시대에 뒤졌거나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니다. 전쟁범죄 법령이 1991년에 소개된 영국에서는 법률의 합법성이 다음과 같이 정당화 되어 있다.

“혐의받고 있는 범죄의 엄청난 중대성에 근거한 논증, 그러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주목하도록 하는 도덕적 사건은 소급적 입법의 원칙에 대한 반감, 혐의를 받는 범죄와 잠재적 피고들의 연령, 실질적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까마득히 멀기 때문에 오는 증거의 어려움 등을 상쇄하였다.”

B. 일본의 맥락

서구 국가들에서 보여진 이 일반적인 이유와 정당성에 더 부가해서 일본의 상황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더 있다. 일본과 그에 희생된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상황은 전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은 그의 이웃 나라들과 세계에 같은 경험을 되풀이 하려는 의도를 모두 포기했다고 확신할 만큼 충분히 그 무서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정리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

과거의 범죄를 깨끗이 씻는 가장 가시적인 방법은 공식적인 사과,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 범죄자들에 대한 영구적 처벌,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군사주의와 팽창주의의 남은 잔재를 추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느 단계도 택하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은 어느 종류의 군대나 무장을 갖지 않는다는 헌법의 명확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미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군대를 유엔 평화유지군의 깃발아래 해외로 파병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인접한 국가들이 일본의 잠재적 군대위협을 두려워 하게 만든다.

두번째로 일본과 그 희생국들은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기소를 동경재판과 연합군에 의한 전쟁범죄 재판 이래 다른 적이 없다.

나치 전쟁범죄자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심지어는 독일 사람 자신들의 손에 의해 쫓기고 기소당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들 중에 그런 경우를 모르고 있다. 대조적으로 우리는 전후 일본이 현재까지 동경재판을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거부하는 경향을 확산시켰고, 일본에 의한 전쟁발발의 적법성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기소를 가능케 하는 법체제도 일본에서는 볼 수 없다.

“일본의 법률은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 시효제도는 전통적으로 모든 종류의 범죄를 고려해서 일본에서는 수립해 놓았고, 그리고 국내법의 관점에서 보면 철폐를 위한 특별상황이나 또는 예외적 규정이나 시효체제의 적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차후에 보는 바와 같이 일본도, 아시아 내의 그의 희생국가들도 법령제한의 비적용성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지도 비준하지도 않았다.”

셋째로, 일본의 희생국가들은 전체로서 국동국제군사법정(IMTFE)과 그 이후의 일본전쟁 범죄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중국은 그 영토의 몇 지방에 그 자신의 전쟁범죄 재판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시행하였다. 인도와 필리핀은 국동국제군사재판소가 세워진 몇 달후에 이름들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 국가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본전쟁 범죄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서방국가들로 구성된 연합군 특히 미국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경법정과 B, C급 전쟁범죄자들을 시도한 다른 군사법정들을 포함한 기소내용의 거의 모두는 연합군에 대해서 인권침해와 재산 피해를 포함하고 있다.

연합군보다 더 길고 심하고 고통을 겪은 식민지화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경시되었다. 아무도 한국과 중국 위안부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네덜란드 위안부들과 관련된 많은 일본군인들이 처벌되었다. 희생 국가들은

반인간적 범죄를 범한 악명높은 일본범죄자들을 처벌할 기회를 상실했다. 다음의 표가 그 논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표는 2,116번 공판이 군대사령부 앞에서 열렸고, 또는 뉴렘버그 국제군사재판, IMTFE, 그리고 뉴렘버그 이후 재판들 외에 각 나라와 대응하는 법정들 앞에서도 공판이 열렸다.

나라	법정숫자
미국	950
영국	541
호주	275
프랑스	271
네덜란드	35
폴란드	25
노르웨이	11
캐나다	5
중국	2
그리스	1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의 점령으로 파괴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국제행사에서 전적으로 제외되었다.

(2)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현재 처벌의 가능성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이후 일본은 이미 약 47년을 보냈다.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일본전쟁 범죄자들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논쟁은 어쩌면 매우 이상하고 어리석게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 희생자들과 2차대전 점령의 그 비참함이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자들은 보상과 배상 그리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재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들의 감정은 상처를 심하게 받았고, 그들은 일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남아있는 전쟁범죄자들과 반인간적 범죄자들에 대한 고발은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다만 정의감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또한 아시아 국가간에 그리고 특별히 국민들 간에 관계를 정상화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에 전쟁범죄자들을 법정에 불러오는 일에는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장애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시간한계와 비소급력은 논쟁의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국제공동체는 이미 국제 범죄법의 역사적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한 법령한계의 부적용 협약을 통하여 심각한 인권침해에 있어서는 시간 한계가 없다는 원칙을 수립해 놓았다. 그리고 다른 국제 기구들, 규정들 협정들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국제적이라는 것이다. 그것

은 지방자치법 위반의 일반적용과 다르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법령제한을 지지하는 이론이 토론중인 국제범죄에 적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충분한 이론과 실천은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가 그 협약에 앞서서 그리고 독립적으로 국제법 하에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주도록 쌓아 왔다. 동기의 재고, 협약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한 국제법의 다른 자료의 요약은 논의중에 있는 일본범죄에 대한 현재기소의 가능성을 증명하는데 지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 후에 이 글은 일본국내법 체제를 다룰 것이다. 그것은 일본이 또한 법령제한 비적용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함에 있어서 면제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우리는 처벌될 수 있는 범죄 법정들, 도주한 범인의 인도, 기소와 재판과정과 같이 점점 더 구체적인 문제로 나아갈 것이다.

시초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즉 이 글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현재 처벌 가능성을 제안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말한다. 논리적 배경과 가상할 수 있는 실제문제들은 지금부터 고심하면서 정교히 구체화 되어져야 한다.

제 2장 법령제한의 비적용에 관한 협약의 재고

2-1. 협약발생의 배경

(1) 비정부 단체에 의한 논쟁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기소가 독일 국내 형법 체제에 의해서 금지되는 기간이 가까와 옴에 따라 그러한 기소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강한 의견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일어났다. 1965년경 독일의 관리들은 저지른 범죄와 누구인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前 나치 당원들이 3만 내지 3만 5천이 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이들의 반수는 재판에 부치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인간적 범죄를 처벌않은 채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논쟁은 세계 여러곳에서 일어났다.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의 중요한 희생자들이었던 국가들에서는 그러한 반응은 특히 격렬했고, 정의와 인간성의 이름으로 시위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한 그 문제의 법적 토론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반응의 행태를 취해졌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법령제한의 그 합법성에 도전하였다. 1964년 9월 벨지움에서 불란서의 사법저항의 행동위원회와 저항의 국제회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나치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법령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행동을 촉구했다.

1964년 6월, 와르소(Warsaw)에서 국제연구 및 조사위원회는 그 문제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두 사람의 동독 학자가 동위원회에 제안했던 것이 아래와 같다.

1. 독일 정부와 서베를린의 상원은 입법화할 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그 법안은 독일의 파시즘과 군사주의를 제거해야 할 국제적 의무에 일치하여야 하며 독일 파시즘이 저지른 반평화 범죄, 전쟁범죄, 반인간적 범죄는 선고에 관한 규정과 징역에 관한 독일법의 국내적 규정에 따를 수 없었고, 또 없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규정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들에 있어서 또는 다른 형태로 연방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은 그들의 의도를 선포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심각한 범죄로 인하여 제시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연대노력과 협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독일 평화조약을 통한 결정적인 해결을 위한 길이 마련될 것이다. 그 기능은 2차 세계대전에 관한 마지막 말로 쓰는 것이다.

한 중요한 계기가 국제법학자 회의에서 내놓은 성명서에 의해 마련되었다. 그것은 1964년 6월 5일부터 7일에 와르소에서 열렸고, 16개 유럽국가들로부터 온 법학자들이 참석했다. 그 성명서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협의회는 알고 있다....나치당원들이 범한 범죄들은 반인간적 범죄이며 그 범죄의 현상은 보통범죄의 법적 현상과 전폭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공동 국제법의 지배를 받고, 후자는 국가(주)의 지방자치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한 지방자치법은 보통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제한을 준다. 그것은 그 효력에 대한 급속 규정에 의해 그렇게 한다. 이것은 반인간적 범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방금 설명되었듯이 국제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국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한기간과 전쟁범죄와 각별히 나치 범죄의 기소를 위한 일정기간의 제한이라는 것이 설정된 원칙이 없다. 국제법 규정은 법정과 처벌 전에 그러한 범죄를 기소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래서 인류는 나치 폭정과 잔인의 재언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사람들의 이 정당한 염원에 따라 이러한 범죄의 기소와 처벌이 국가들의 오로지 국내 재판관 안으로 독립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제법에 의해서 국가들에 부여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책임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들은 다양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국제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들의 법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국가적 전통과 헌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한 국가가 이 의무 수행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 의무는 법령제한과 같은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불일치 되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협의회는 고려하기를 만약에 한 나라가, 보통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제한에 관한 수립된 규정을 참조하여, 논의되고 있는 그 범죄가 보통법 아래서 단순히 개인적 살인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구실로 나치

범죄를 기소하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국제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비정부 조직들이 자라는 데서 오는 압력으로 그것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정부적 조직들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 유럽 협의회 내에 추구와 결정이 주목할 만하다.

(2) 유럽 협의회

인권과 근본 자유보호협약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법 없이는 무죄, 무처벌)의 명백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1965년 1월 28일에 개최된 유럽 협의회 자문회는 23번째 회기에서 반인간적 범죄의 적용으로서 법령제한에 관한 추구 415를 채택하였다. 그 추구는 다음과 같다.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범죄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동기에서 거대한 규모로 체계적으로 범해져서 우리 문명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반인간적 범죄로 묘사된 그러한 범죄들이 2차 대전 기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로 범해졌기 때문에;

인권보호 관심에서 유럽협의회는 법령책임을 가졌는데 그것은 반인간적 범죄에 의해 제시된 그런 권리의 심각한 침해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몇몇 회원국의 법들은 법령제한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은 반인간적 범죄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소하도록 곧 이 나라들에 가능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유엔은 국제형법의 성문화 작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결론되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몇 회원국들이 그들의 법을 개정했고, 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보통 범죄들을 위한 법령제한에 관련된 일반법 규정들이 반인간적 범죄에 적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a) 그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즉각적이고 적절한 추정을 하도록 회원정부들을 초대하기 위해 법령제한의 적용이나 또는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동기로 이차 대전 이전 또는 그 기간에 범한 범죄들,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반인간적 범죄들이 처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b) 반인간적 범죄는 법령제한에 지배받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협약을 가지고 정부 전문가위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3) 국가법률

최근에 많은 나라들은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를 유죄 선고하기 위해 특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전쟁범죄와 관련되고, 독일과 이스라엘이 택했으며 이 문제에 가장 깊이 관련된 유일한 법적 단계를 여기 소개하려고 한다.

A. 독일 연방공화국

독일 연방공화국의 계획된 대량학살을 특별히 처벌하는 독일 형법전의 제 220조 a항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형법전은 살인적 행위, 살인, 육체적 상태, 불법적 자유박탈 그리고 강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급효과는 없었다. 형법전에 있는 시한을 위한 규정들은 형법전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유효하다. 서한과 연관된 그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제 66조(형사 절차 금지의 시한)

범죄기소와 선고집행은 시한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제67조(기소금지 시한)

1. 기소는 일생 교도소에서 감금 처벌을 받을 만한 중한 범죄의 경우에 20년 후에는 시한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최대 처벌이 10년 이상 자유를 박탈되는 중한 범죄는 15년 후에, 더 짧은 기간의 자유가 박탈되는 처벌을 받은 중범죄는 10년 후에 시한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2. 기소는 3개월 이상 투옥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덜 중한 범죄의 경우에 5년 후에, 이 경우 다른 덜 중한 범죄의 경우에 3년후에는 시한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3. 경범죄 기소는 3개월 후에 시한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4. 그 제한기간은 효과발생 날짜와 무관하게 죄를 범한 날에 시작되어야 한다.

5. 범죄이유에 의한 안전과 재활의 조치를 부과하는 힘은 시한에 의해 기소가 중지되는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온세계로부터 받는 압력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시한기간을 연기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를 했다. 형사법 아래 제한기간 계산 법령은 1965년 봄에 만료되는, 독일인에 의해서 또는 반해서 저지른 가장 심각한 종류의 범죄들에 대한 제한기간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이 법령 덕분에 가장 심각한 종류이면서 미리 발견하지 못한 범죄의 기소는 1965년 5월 8일 지나 196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될 수 있다. 그와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다;

제 1조(시한 기간의 연기)

1. 1945년 5월 8일부터 194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은 종신징역에 종속된 중범죄 기소에 대한 시간제한 기간의 계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다. 그 기간에 대한 이러한 중범죄 기소에 대한 시간제한은 연기되어야 한다.

2. 문단 1은 제한기간이 이 법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이미 만기가 된 법령에 적용할 수 없다.

제 2조(점령법 폐지의 최초법 채택)

제1조 아래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제한기간은 연기되었다. 점령법 폐지 최초법의 제 5조 1항은 1956년 5월 13일 자로 적용될 것이다.

시한을 제거하는 더욱 과감한 단계는 1969년 6월 26일에 분데스 타(Bundestag)과 1969년 7월 10일에 분데스라트(bundesrat)에 만들어졌다. 이 법률에 감사한다. 대량학살의 범죄에 대한 제한기간은 존재할 수 없다. 단순한 살인에 처럼 전의 제한기간은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한 연장은 독일 관리들로 하여금 1979년 말전의 범죄 규정에 관여하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규정은 공식적 조사에 의해 다만 2009년에 효력을 발생한다.

B.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대량학살 협약에 효력을 주기 위해 대량학살 법 범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나치당과 나치 협력자들법이라고 제목붙인 새 법이 1950년에 시행되었다. 왜냐하면 대량학살 법의 범죄는 소급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법의 제 1항 a는 진술한다;

“다음 범죄중 한가지라도 범한 사람은...

(1) 나치정권 기간동안 원수국가에서 유대사람들에 대한 죄를 구성요소로 한 법령;

(2) 나치 정권기간중 한 원수국가에서 반인간적 죄를 구성요소로 한 법령;

(3) 나치 정권기간중 한 원수국가에서 전쟁범죄를 구성요소로 한 법령;은 사형선고에 처해져야 한다.

이스라엘의 법은 뉴렘버그 재판에 의해 선행된 하나의 입장이다.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의 정의는 국제군사법정의 강령과 매우 근사하다. 이스라엘 법과 그 강령은 둘 다 소급의 효과가 있다.

2-2. 협약의 시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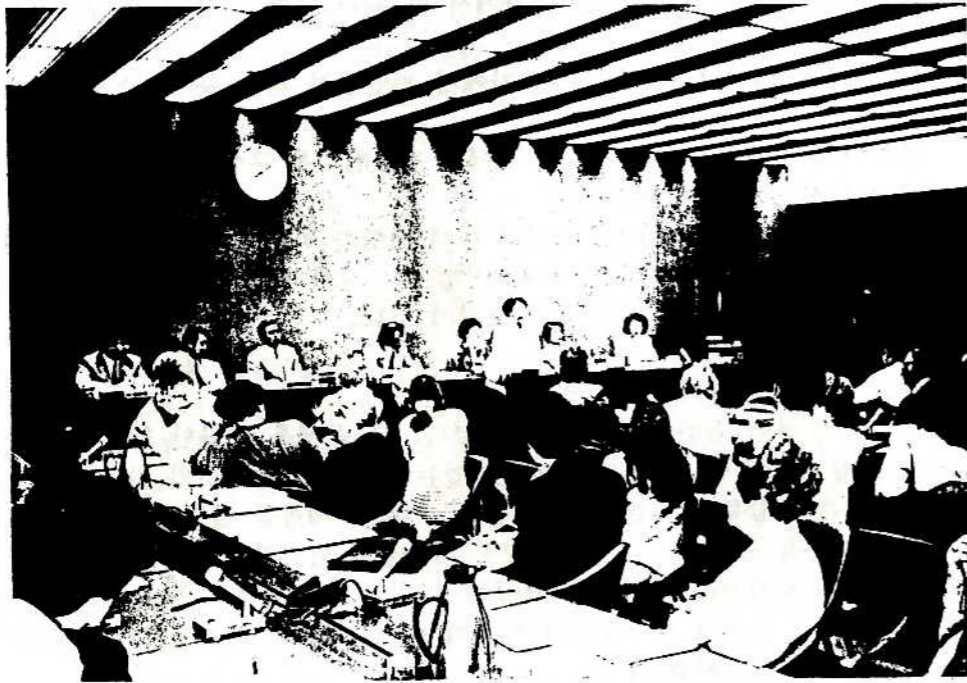
드디어 토론이 유엔의 단계로 옮겨졌다. 그 문제를 언급한 첫번 자료는 1965년 4월 9일의 인권위원회 결의문이었다 “전쟁 범죄자와 반인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처벌에 대한 질문” 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다.

이 결의문을 통해 그 위원회는 모든 국가들이 반인간적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의 처벌을 확실히 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권유했다. 그리고 사무총장에게 국제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관해 연구를 착수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연구는 1966년 2월 15일 사무총장에 의해 시행되었고 제출되었다. 이어서, 인권위원회는 21번째와 22번째 회기중에 그 문제를 토의하였다. 23번째 회기동안 위원회는 협약초고의 조항들을 논평할 작업반을 조직하였다. 42번째 회기에서 경제사회 협의회는 결의문 1220을 총회에 보낼 것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협약예비 초안은 사무총장과 위원회 작업반의 보고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총회의 22번째 회기에서 셋째와 여섯째 위원회의 합친 작업반이 협약초고를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토론동안에 대표자들의 의견은 문제된 범죄의 정의, 협약의 규모, 국내적 제한의 비적용 원칙의 정확성 그리고 다른 문제들로 심각하게 갈라졌다. 그러나 국가들은 마침내 이것은 그 기간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원칙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전쟁범죄에 책임져야 하는 범죄자들과 반인간적 범죄는 추적되고 영원히 심문해야 할 것이다. 협약은 반증하는데 투표한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법령제한 비적용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다만 더러 추상적인 조항의 발표현에 잘못을 발견했다. 실제로 영국과 호주는 협약을 채택하려고 했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허용하는 법을 최근에 시행하였다.

드디어 1968년 11월 26일에 유엔 총회는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법령제한 비적용에 관한 협약을 서명, 비준, 취득할 수 있도록 채택하였다.



[지난 8월 18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한 민간단체 대표들에게 정신대 황금주 할머니가 증언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정대협에서 이호재 공동대표,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 정진성 정신대연구회장이 참석하였다.]

2-3. 협약의 내용

(1) 협약의 구조

협약은 서문과 열한개의 조문으로 되어있다. 1조와 2조는 법령적 제한이 적용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정의와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할려는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다. 제3조는 당사국에 관하여 제2조에 언급되어있는 사람들을 인조할 법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제4조는 국가당사국으로 하여금 국내법 체계에서 이 협약을 받아드리도록 하는 입법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 5조로부터 11조까지는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2) 서문

서문에서는, 당사국들이 "이 협약을 통하여 국제법에서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하여 시한이 없다는 원칙을 받아드리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 원칙의 예방적 측면의 점에서, 서문은 "전쟁범죄와 반인간적범죄의 효율적 처벌은 그러한 범죄의 예방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서문은 나아가서 "보통범죄의 시한에 관한 국내법 규칙을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에 책임있는 자라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여론에 중대한 관심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법령적 제한불적용의 범죄들

제1조에 의하면 법령적 제한은 아래 두 절에서 언급하는 행위들에 대하여는, 그 범행의 일자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없다.

"(a) 1945년 8월8일의 뉴렘베르크의 국제재판소의 헌장에 규정되고(54) 유엔 총회의 1946년 2월 13일의 결의 3(1)과 1946년 12월11일의 95(1)에 확인되어 있는 전쟁범죄, 특히 전쟁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1949년의 제네바 협약에서 나열된 "중대한 침해";

(b) 1945년 뉴렘베르크의 국제재판소의 헌장에 규정되고 유엔 총회의 1946년 2월 13일의 결의 3(1)과 1946년 12월11일의 95(1)에 확인되어 있는 전시 또는 평화시에 범해진 반인간적 범죄들, 인종파별(apartheid)정책에서 결과된 무장공격에 의한 퇴거 또는 점령과 비인도적 행위들, 집단학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1948년 협약에서 규정된 집단살해범죄—비록 그 범죄들이 자행된 국가의 국내법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1조의 주요 목적은 나찌 기간동안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의 처벌이지만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적용되는 총체적 일시적 소탕적(an all-embracing temporal sweep)" 성격을 가지었다. 그러므로 일본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 역시 이 조항으로 적용된다.

(4) 소급법의 문제

전범처벌의 연장의 또 하나의 주요문제는 소급법의 문제였다. 입법동안 논쟁은 1966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계약과 1950년 유럽위원회가 채택했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에서 규정한 "범없이는 범죄도 처벌도 없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일어났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계약 제 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어떤 것도 범행당시 국제공동체에서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범죄가 아닌 행동 또는 무행동에 대하여 재판과 처벌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없다."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참석국가들의 대다수는 소급금지 원칙이 국제법 하에 범해진 범죄에 적용될 수 없다는데 동의하였다.

그 협약이 국제법의 새 원칙을 수립했는지, 또는 기존의 원칙을 확인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누어졌다. 수개의 국가들은 이것은 국제법에서 새로운 원칙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이 협약은 기존원칙을 다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의 새 원칙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6) 다른 한편으로 다른 국가들, 대부분이 동구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쟁범죄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 불적용원칙이 이미 국제형법의 기존원칙에서 인정되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57). 이 견해에 의하면, 협약은 기존원칙을 단순히 재서술한 선언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의 원칙이 일반적이고 실제적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5) 범인인도

당사국은 "제2조에 언급된 사람들에 관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인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또는 기타의 국내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3조는 규정하고 있다.

이조항은 협약의 본질이라 불릴 만한 것이다. 만일 혐의를 받고있는 전범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협약의 모든 노력들이 무위로 될 것이다. 이 조항으로 국가들은 절차상 이유로 또는 정치적 범죄가 내포하는 논쟁 또는 이전에 많은 전범들의 재판을 막았던 더 유리한 법의 적용으로 범인인도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제3장 국제법에 의한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 처벌에 대한 일본의 책임

3-1. 법령적 제한(Statutory Limitations)의 불적용의 원칙에 대한 국제법의 기타 근거

2차대전이 미쳐 끝나기 전에 이미 잔학행위를 처벌토록 공표된 선언들이 공포되어 있었다. 1943년에 모스크바선언은 연합국들이 전쟁범죄자들을 "땅끝까지 추적하여 기소자들에게 인도하여 정의가 설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8). 1943년 포츠담협약(Potsdam Agreement)에서는 "전범들과 전쟁범죄의 잔학한 행위를 계획하거나 나치의 잔학행위에 참여하거나 그 짓을 저질렀던 일에 참여한 자들은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당사국들은 결정하였다.

이러한 선언들과 그 후에 나온 국제협약들은 법적용의 기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런던 협약과 부속 헌장, 독일통제협약회의 법 제 10호와 국제군사재판소헌장은 기소와 재판의 시한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 법령상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선언들과 협약들이 전범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에 시한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제정이 되었다는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59).

그러나 시한의 부재의 원칙은 1954년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가 채택한 평화와 인간의 안전에 반하는 범죄법규 초안에 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초안에서는 "이 법규에서 정의한 바 평화와 인간의 안전에 반한 범죄는 국제법에 의한 범죄로서 이에 책임있는 개인들은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범죄가 국제법에 의해 다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범죄들이 특정 국내법체계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시한에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집단학살 범죄를 국제법상의 범죄로 간주하는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집단학살(에 대한) 협약(The Genocide Convention)은 같은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3-2.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의 불적용 원칙은 관례법이고 관습법이다.

(1). 관례적 국제법으로서 법령제한의 불적용의 원칙

국제사법재판소의 법규 제 38조 1항은 국제법의 근거들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규정으로 간주되고 있다(60). 이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재판소는 법정에 제출된 그러한 분쟁들을 국제법에 따라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가. 분쟁중인 국가들(the contesting states)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된 일반적 규칙 또는 특별한 기존 규칙들
- 나. 법으로 받아들여진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 국제적 관습
- 다. 문명국들이 인정한 법의 일반적 원칙
- 라. —법의 규칙의 결정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여러 나라들의 법정의 판결들과 최고로 자격있는 법학자들의 학설

무엇보다도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의 원칙은 법령제한의 불적용에 관한 국제협약대회(convention)의 법제정을 통해 국제적 관례법이 되었다. 일본이 이 대회를 비준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이 원칙은 일본에 국제법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이의(異意)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비록 공식적으로 그 대회를 비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은 그러한 원칙의 적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국제조약이란 그 조약의 당사자가 된 국가들만 구속한다는 것과 제3당사자에게 어떤 어떤 기존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은 잘 이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 규범 그 자체가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기존의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도 광범하게 알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62). 사실상 수 많은 국가들이 국제협정(a convention)을 고수하고 있고 또는 거기에 당사자가 되지 않고도 그 협정의 규정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그것은 국제법의 독자적 근거로 볼 수 있다(63).

어떤 학자들은 다수 참석자들이 서명한 대회에서의 어떤 어떤 의견일치는 국제협약의 채택 순간부터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법의 일반규범을 창조한다고 주장한다(64). 구속력을 가진 의견의 일치가 선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협약과를 구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의 원칙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계획된 대회의 고안에서 확인되었고 부상하였다. 그것은 선언적 협약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비록 일본이 이 대회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의 원칙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2).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이다
(이부분은 생략함, 47-49)

3-3. 관계국가들의 헌법조항의 분석

(1). 국제법에 대한 일본의 서약(Commitment)

2차대전 후에 일본은 그 헌법을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서방 국가들의 수준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적인 것이었다. 특히 그 헌법은 선언하기를 일본이 서명한 조약들과 '확립된'(established) 국제법'을 진심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69).

여기서 '확립된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시행되고 있는 국제관습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70). 이 표현은 문제의 대회에서 규정한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의 원칙을 국제관습법으로 포함한다는 것이었는데에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확립된 국제법'의 준수의 의무는 말로만 하는 선언이 아니고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 기관들은 물론 국민은 조약과 확립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서 위의 일본 헌법 조항은 일본이 조약과 '확립된 국제법'을 그 국내법체계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을 국내법체계에로의 통합은 다른 상충하는 조약이 없는 한 이행되어야 한다(71).

특히 주목할 것은 일본정부 자체가 대회의 토론회기간동안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에 관한 협정(convention)의 기본적 생각(idea)과 주된 구조(frame)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본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이 협약의 조항이 초안 보다도 더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72). 그 당시 일본정부가 보였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일본 역시 어떤 전쟁범죄들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들에 대한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의 원칙을 일본의 법체계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동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73).

(2). 국제관습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

다음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체계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문제이다. 이 장에서는 다음 두가지 측면이 검토될 것이다. 첫째로 검토될 문제는 조약이나 국제법이 일본인들의 맥락에서 소위 말하는 자동 집행력(self-executing effect)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자동집행적'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의회를 통한 법제정을 위한 추가적인 이행조치없이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약 또는 국제법을 의미한다(74). 일본의 경우에는 시행을 위한 추가 제정이 없이도 조약이나 국제법은 관리자들은 물론 국민에게 대하여 의무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75). 인간의 기본권의 주장의 원칙은 그것이 개인의 권리가기 때문에, 또 그것이 세계공동체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규범적 원칙이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자동-집행적이라고 이해되어 왔다(76). 법정과 일반 국민들을 포함하여 관계당국은 국제관습법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닌다(77).

토론되어야 할 두번째 문제는 국제법체계와 국내법 체계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일본의 형법은 범죄의 기소에 대한 기간의 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다. 다음에서 일본의 형사소송법에서 발췌하여 인용한다: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5년;
- ㄴ. 징역이나 강제노역 10년의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0년;
- ㄷ.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강제노역의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7년;
- 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강제노역의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5년;

일본의 법체계에 의하면,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도 15년이 경과하면 면소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국제법과 상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의 원칙은 일본의 헌법이 존중하고 따르기로 선언한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위에서 확인하였다. 더욱이 일본의 압도적인 대다수의 학자들은 조약과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우월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설명되어왔다(79).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의 원칙은 일본의 형사소송법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 뉴렘버크(Neuremberg) 원칙 제 II조에 대한 국제법 위원회의 논평(코멘트)을 인용하는 것은 또한 적절할 것이다. 즉 그 논평은 “국제범죄를 범한 사람은 책임이 있고 (그러므로) 국내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국제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보통 말하는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의 '우위'(supremacy)를 의미한다.”(80). 뉴렘버크 재판과 동경재판의 합법성(Legality)이 전복되지 않는 이상, 국제법의 '우위'는 이 영역에서 부정될 수 없다.

기간만료의 문제에 관하여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본형사소송법의 규정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계대전 전과 그 기간에 범한 모든 일본인의 범죄는 적어도 무조건 항복이후 기간제한의 최장기인 15년이 되는 1960년부터는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제한기간의 만료로부터 이미 이득을 본 범인들에 대하여 기소가 어떻게 제기될 수 있는가 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기간만료가 결코 '면소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3). 피해국가들의 헌법과 국제법

한국헌법의 규정과 헌법학자들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일본의 그것들과 유사하다. 헌법 6조 (1)항에서는 “헌법에 따라서 적법히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들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규칙들은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헌법 제 141조, 인도헌법 제 51조, 버마헌법 211조, 필리핀헌법 제2조 (3)항은 국제법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일본과 한국과 똑 같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82).

피해국들의 이러한 헌법규정들과 해석은 국제법 존중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고 현재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제4장.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가능한 처벌절차

4-1. 어떤 범죄가 아직도 처벌될 수 있는가?

처벌받을 범죄의 형태와 범위는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에 대한 협약에 명기되어 있다. 제2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그 협약의 태도는 뉴렘버크 국제군사법정의 헌장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협약에서 처벌가능한 범죄의 규정이 애매하다고 몇 나라들이 말했기 때문에(83) 보다 좁게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일본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조건들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20세기의 전반기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기간으로부터 보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의 카데고리로 구분될 수 있으면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사건들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예를 들면 세군전실험을 했고 중국과 기타 국가들로부터의 수천명의 전쟁포로에 대한 생체해부를 했던 소위 731부대의 지휘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의 헌장, 1946년 12월 11일의 유엔총회의 결의 3(1)과 집단학살(에 관한)협약에 근거하여 열었던 나찌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의 재판에서 축적된 수없는 사건들은 앞으로의 일본범죄자들에 대한 가능한 기소와 재판 실시에 선례가 될 수 있다(84).

그것은 2차대전 발발 이전 일본의 몇몇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점령 기간동안에 자행된 범죄들을 포함할 것인가? 이 질문은 평화시대 동안 범해진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문제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전범과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일련의 국제적 장치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즉 전시에나 평화시에 범해진 이러한 범죄들은 모두 처벌가능한 범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뉴렘버크 재판이후에 있었던 그 후의 재판정에서 전쟁과 무관했던 범죄들이지만 인간에 대한 범죄가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만큼 엄청나게 큰 규모이고 야만성이 있을 경우 처벌되었다(85). 집단학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대회(the convention)는 “계약당사자들은 평화시에 범해졌거나 전시에 범해졌거나 간에 집단학살하는 이것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을 규정한 국제법에 의한 범죄 이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86).

사실, 일본군대는 2차세계대전 이전에 합병이란 방법으로 한국, 대만, 그리고 만주를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고 점령하였다. 합병과 가혹한 통치 동안 독립운동은 잔인하게 짓밟혔다. 이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인간살육, 집단학살, 인간에 대한 다른 종류의 범죄들이 자행되었는데 이것은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에 대한 협약에 규정된 전범과 반인간적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다(87).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이 범해진 때로부터 너무나 긴 시간이 경과하였다. 범인들이 살아있는 경우를 보기 어렵고 기소에 필요한 증인이나 기타 증거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4-2. 누가 그들을 재판할 것인가?

—법정을 개정하는 문제

국제공동체의 근거에서 전범과 반인간적 범죄를 심리할 수 있게 하는 국제 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데 관하여 많은 제안들이 제시되었다.(88). 1948년 12월 9일의 유엔 총회는 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거기에서는 “국제공동체의 발전의 과정에서 국제법에 의한 어떤 범죄의 재판을 위한 국제사법적 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갈 것이고” 그러므로 “국제사법법정의 형사재판부와 같은 사법기관 설립의 요망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국제법률위원회를 초빙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89). 그러나 국제형사법정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사법권을 가진 그러한 법정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사법권을 가진 법정을 설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자(? rapporteur)인 반 보벤(van Boven)씨는 미이 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인권법정 또는 형사법정을 지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설립하는 일은 그러한 위범에 대한 세계적 재판권을 허가하는 입법같은 것으로 인권의 중대한 위반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90). 비록 그가 사법권, 사법기관의 구성, 절차, 결정의 시행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법정의 몇가지 종류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이 모든 나라들을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국제법정을 설립하는데 성공하리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 역시 그러한 법정에 굴복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뉴렘벨크 법정과 IMTFE 이래로 이와 유사한 어떤 국제법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형사재판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연합보상위원회(United Compensation Commission, (UNCC))의 예를 보면 상당히 암시적이다. 그것은 이락의 쿠웨이트 불법적 침략과 점령에서 결과된 인권과 기본적 권리의 중대한 위반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유엔의 감독하에 설립되었다.(91) 일본의 동의로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이 경우, 중재법정과 같은 형태를 될 수 있을 것이다.(92). 1981년 알지에 합의(Algiers Accords)에 준하여 설립된 이란-미국손해청구법정(Claims Tribunal)의 경우에 충분한 해결에 이른 최근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임시 법정은 수년후에 그 업무를 와결하였는데 이란의 미국인질들의 석방을 이루어 냈다.(93)

만일 유엔의 기구의 결정이나 일본과 피해국가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민사와 형사사법권을 가진 국제법정 또는 지역법정을 설립하려는 모든 노력들이 결국 실패한다면, 피해국은 문제의 범죄를 스스로 심피할 사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한 범죄는 그 범죄가 범해진 영토의 나라에서 심피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관습법으로 확립이 되었다. (94). 예를 들면, 해적의 범죄는 해적이 발견되는 영토의 어떤 나라든 재판할 수 있다는 국제법의 관심이 국가들의 관습에 의해 인정된 최초의 범죄이다. 전범과 반인간

적 범죄는 뉴렘벨크 원칙이래로 해적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제범죄의 범주에 첨가되었다(95).

더욱이 범죄의 장소나 범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 범죄를 처벌할 권리를 국가에게 허용하는 세계사법권(universal jurisdiction)의 원칙이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었다(96). 어떤 범죄들에 대한 수개 국가들의 국내법에 의해 확립된 세계적 원칙(Universal principle)은 최근에 와서 전범의 전범주(a whole category)에 대한 인정되었다(97). 1949년 8월 12일에 제네바 대회(The Conventions of Geneva)에 의해 국제적 조약법이 역시 도입되었는데 이 조약법은 주된 계약당사자들(The High Contracting Parties)에게 범행장소나 범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전범을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2차대전 후에 세계사법권의 적용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어 인간에 반하는 범죄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대다수의 법이론학자들이 반인간적 범죄 일반을 세계사법권에 제출하도록 동의하고 있다(98). 이 원칙에 의해 설립된 법정은 “비록 국가적 사법권의 형태를 취하는 하지만 그 법정이 수행하는 기능의 이유에 의해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국제적이다. 그 법정은 사실상 해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타국가들을 위하여, 또 국제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국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 법정은 제도적으로는 결함이 있지만 국제법질서의 사법 기구로 작용한다”(99). 그러므로 일본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범과 인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한국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4-2. 범인이 어떻게 법정에 인도될 수 있는가?—추방과 범인인도의 문제

(1). 전범과 인간에 대한 범인의 인도의 불가피성

만일 일본정부가 전범과 인간에 대한 범인을 그 영토내에서 그 사법권에 의해 기소하는데 관심한다면 처벌의 절차는 간단하다. 타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심문과 증인을 구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재판에 일본정부와 협력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보여온 태도와 정신상태에서 판단컨대 일본이 기소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그 다음 가능성은 일본의 전범이 당국 앞에 자진하여 나타나는 일이다. 과거에 소수의 양심적 전범들이 공중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세계2차대전 중에 또는 한국점령기간 동안에 저질은 범죄를 고백하 놀라운 장면이 있었다.(100). 그들이 형사절차를 통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킨다면 범인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외국사법재판소의 제단에 던질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

전범을 해당법정에 데리고 오는 남은 마지막 방법은 일본전범이 국적 또는 주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또는 타국이 그들 범인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효율적 수단이 없이는 처벌에 대한 어떤 토론도 무용하고 허사일 것이다. 다행히도 전쟁범죄나 반인간적 범죄를 자행한 자들

의 인도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

(2). 전범과 반인간적 범죄인의 인도와 추방의 법적 이론과 실제

범인인도와 추방은 국가가 개인을 강제로 이전(이동)시키는 법적 과정을 구성한다. 범인인도는 국가가 기소하기를 원하는 개인을 요청하는 국가에게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인인도를 위하여는 공식적인 상호범인인도조약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추방은 한 국가가 외국인을 추방하는 일방적 조치이다. 거의 모든 전쟁범죄의 사건은 추방으로 간주되어왔다. 그 까닭은 전범이 관계국가들 간에 상호범인인도조약 없이도 이동했기 때문이다. (101).

유엔은 회원국가들에게 전범혐의자들을 구속하고 인도하는데 협력해 줄것을 여러번 촉구하였다.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1946년 2월 13일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어떤 전범들이 어떤 국가들의 영토에서 재판(justice정의)을 계속 피하고 있음을 믿고서; 유엔의 회원들은 위의 범죄에 책임이 있거나 그 범죄에 동의하여 참여했던 자들의 구속과 이들이 해당나라의 법에 따라서 재판받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행위가 자행되었던 국가에로 인도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을 권면하고; 유엔의 회원이 아닌 국가의 정부들도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과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던 나라에로 범인들을 즉각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각영토에서 그러한 범인들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102)

그 다음으로 1947년 10월 13일의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2월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유엔의 회원국들은 전범의 인도와 재판에 관하여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주기를 권면한다; 혐의를 받고 있는 전범들이나 반역자들의 인도를 원하는 유엔의 회원국들에게... 권면한다.”(103)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와 같은 국제적 범죄에 관한한, 범인인도의 의무는 관습법의 영역에 속한다. 그로티우스(Grotius)이래로 범인인도 또는 기소(aut dere aut judicare)의 원칙은 발전되어왔고 집단학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1949년의 제네바 협약, 고문과 기타 잔학행위, 반인도적 또는 인간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 또는 처벌에 대한 협약, 그리고 테러와 관련된 몇개의 협약에 포함되었다. 이 원칙은 국제법에 의한 범죄를 범한 자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피신처가 허락될 수 없음을 보장하는 장치로 제공되어 왔다. (104)

우리는 이미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에 관한 협약에서 언급된 범인들을 인도할 의무가 국가들에게 있다는 조항을 검토하였다. 고문과 기타 잔학행위, 반인도적 처우 또는 처벌에 대한 협약 역시 범인인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05). 분쟁의 당사국들이 범인인도조약이 없다하더라도 이 협약은 범인인도의 법적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 (106). 1949년 제네바 협약은 전범에 대한 조사와 범인인도를 위하여 관계국가들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주된 계약당사국들은 그러한 중대한 위법(breached)을 범했거나 범하도록 명령한 사람들을 수색할 의무가 있고 그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인도하여야 하며...재판을 위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다른 주된 계약당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러한 협약과 확립된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문제의 범인을 무조건 예외없이 처벌하고 인도하는 법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107).

(3) 범인의 불법적인 이동(transfer)의 효력

문제의 범인이 불법적인 납치의 방법으로 피해국의 법정에 데리고 오는 일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어떤 나라의 재판권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행사되었음이 알려졌다.

물론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이히만(Ichmann) 사건이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이스라엘의 자원자에 의해 알헨티나에서 체포되었다. 아이히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잡아간 것은 알헨티나의 주권을 침범한 것이 된다. 아이히만이 이스라엘에 이송되게 되었던 상황에 관하여 알헨티나 정부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 고소하자 안전보장이사회는 원상회복 요구를 포함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나 다른한편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다. (108). 알헨티나 정부는 아이히만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두 정부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이스라엘의 대법원에서는 그 판결에서 납치를 옹호하면서 사람을 납치한 것은 일단 법정에서 선 사람들 재판하는 법정의 재판권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국제관습법이라고 설명하였다. (109).

사실, 국제법을 위반하여 국가의 사법권에 의해 인도된 사람이 그를 재판하는 국가의 사법적 권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원칙은 미국에서 많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발표되었다. (110).

4-4. 수사와 증거의 문제

전후에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잔학행위의 전모를 알아낸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고 부담이 되는 문제이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증인들은 찾을 수 없고 기억은 사라지고 증거는 발하게 된다. 그 위에, 일본은 앞으로 진상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한 끝에 종전 직전에 그

들의 범죄에 관한 모든 문서를 조직적으로 없애려고 시도하였다.(111)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범죄들은 집단적이라는 특수성의 경향때문에 죄책의 증거는 그렇게 급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112). 한국관 리들이 1992년 2월 25일부터 동년 6월 25일까지 단 4개월동안에 행한 조사에서 319명의 정신대여성이 한국에 살아있다는 것을 밝혀냈다.(113).

어떤 나라들에서는 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또는 민간인 차원에서 이미 시작되었는데 정신대 여성문제는 압도적으로 국제적 현상이다. 남한에는 정신대 문제특별조사단이 조직되었는데 외무부의 아시아국장인 그 책임자가 되었다.(114). 일본정부 역시 그 문제를 조사하는 것 처럼 가장하고 있고 일본군이 정신대여성을 모집하는데 개입했음을 공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조사는 정부 자체가 여성들을 일본군인들을 위안하도록 강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다.

민간인 측의 노력은 더 진지하고 꾸준하다. 1992년 8월 12일과 13일에 14명으로 된 일본대표들이 평양에서 조사를 벌였던 바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동안 일본인들은 '위안녀'(comfort girls), 징용, 징병의 이름으로 한국인들을 나누체가서 그들에게 갖은 수난을 안기는 범죄를 범했음을 확인하였다.(115). 정신대여성의 특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기존의 문서(116)들 외에 증인들의 나타남, 범인들의 고백과 문서의 발견등과 같은 새로운 증거물은 범죄의 존재와 규모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도록 수집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범인들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의 수집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4-5. 일본과 피해국가들에서 무엇이 이행되어야 하는가?

우선 피해아시아국가들은 법령적 제한의 불적용에 관한 협약을 서명하고 비준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비준으로 당사국은 법령적 또는 기타 제한들이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의 기소와 처벌에 적용될 수 없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117). 가 있어야가

둘째로 피해국가들은 또한 일본국적을 가진 자들 뿐 아니라 자국민동조자들을 포함하여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를 자행한 자들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국내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자국내에 거주하는 동조자의 처벌 없이는 일본인 범인의 인도 또는 처벌요성이란 진지하게 들릴 수 없다. 절차적인 문제들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들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피해국가들에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같은 중대한 범죄에 법령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은 모든 문명국가들의 법적 이상과 국제법의 실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스라엘법정은 1950년의 나찌법의 합법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스라엘의 입법은 오랫동안 나찌 정권이전과 이후의 독일인들을 포함한 모든 문명국들의 법에 의해 범죄가 되어온 것을 국내법으로 입법화한 것이다. 히틀러와 그의 정권의 법과 형사법령은 법이 아니며 독일법정에 의해 서마저도 그 효과가 소급하여 무효화되었던 것이다....살해된 주검의 발굴과 이의 화장, 제국의 붕괴전에 게스타포박물관의 파괴등과 같은 자신들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하려는 나찌의 방대한 조치들은 나찌들이 자신들의 극악 무도한 범죄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118).

협약의 비준 없이도 일본이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를 국제법과 일본의 헌법으로 처벌할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문제의 범죄의 처벌을 보장하고 범인인도절차를 규정하는 입법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그러한 의무 이행의 태만은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제5장. 결론..

—전범과 반인간적 범죄인의 기소요구의 합의

이 논문에서와 같은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제2차대전 중이나 이전에 자행된 경악을 금치못하는 잔학행위를 법령적 제한없이 처벌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관습법이고 법적 상식을 충족시키는 보편적 정의(Universal Justice)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서방국가들에서는 나찌전범의 수색과 재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2차대전 이래로 인권에 관하여는 국가들의 절대주권의 한계를 받아드리기 시작하였던 것은 국제법상 가장 현저한 발전의 하나이다. (119) 일본정부는 물론이지만 아시아의 피해국가들까지도 재래법과 국제관습법이 규정하는 모든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을 등한시하였다.

우리는 일본인의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를 서방의 국가들과 달리 취급해야 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정의의 여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수개의 아시아국가들에 있는 수없는 피해자들은 일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뻔뻔스러운 정책으로 고난을 당하여 왔다. 전쟁범죄와 인간에 대한 범죄의 처벌을 포함하는 더 철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말로 피해자 자신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만이 아니라 아시아인들과 그들의 후세들이 그러한 극악무도한 짓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맥락에서 성공적인 기소를 하지못한다면 비록 정부 차원에서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발전한다하더라도 아시아국가들과 그 국민들 사이에 계속적 갈등과 분쟁이 계속될 것이다. 일본은 피해국가들이 악성 권위주의 독재자들이 다스리고 있거나 급박한 경제적 도움의 필요성등을 가진 피해국 정부의 약한 위치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의 완전한 보상의 요구와 추가처벌의 문제를 회피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남한정부는 1965년 일본점령시대로부터 발생했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때 한국국민의 강한 항거를 진압하였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자신의 영토내에서 자국민을 배신하고 일본식민지통치자들과 동조했던 한국인 반역자들을 숙청하는데 실패하였다. 이것은 일본정부에게 전범들을 제거하고 처벌해야하는한다고 요구할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근거를 없이 해 주었다. 한국정부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매우 꺼려하였다. 두정부간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때때로 제기되고 번뇌시켜왔다. 최근의 공식 일본방문 때 노태우대통령은 두정부간의 관계는 독일과 폴란서의 형태가 되는 것이 좋다고 자신의 소원을 피력하여 과거역사 대신에 미래에 집착할 것을 약속하였다.(120). 양국지도자들은 정말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세계2차대전 이래로 그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군사동맹을 통하여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는데 성공했던 독일과 폴란서와 같다고 전적으로 생각하는가? (121) 한 일본신문은 그 후에 논평하기를 정신대여성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성숙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22) 그러나 대통령은 그의 국민들의 냉담한 반응을 직면하여야 했다.

“오늘의 교도회담은 독일과 폴란서와 같은 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양국간의 과거의 분명한 해결없는 우정의 감정은 꽃피지 못할 것이다. 그 회담의 진의가 무엇이던지간에 한국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은 비판이었다.”(123)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일본의 이웃 나라들과의 진정한 우의와 관계정상화는 과거의 완전한 해결과 국민들 간의 화해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적 회원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그 경제력에 상응하는 세계정치에서의 지도적 지위를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권의 중대한 침해로 얼룩져있는 일본의 이미지를 씻지 않은 일본의 지도력을 누가 신뢰하가 따를 것인가? 아시아인들이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에서는 일반화 되어있는 지역적 일치성을 수립하지 못하고 인권을 위한 지역 기구(Instrument)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불신과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124).

전범들의 처벌에 관한 이 논의의 진정한 의도는 예 빛을 청산하는 아이디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복이나 복수의 감정으로 처벌을 요구하거나 진행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또 하나의 역사의 과오일 수 있고 이렇게 하여서는 일본과 일본전범들의 진정한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더욱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온 지금 법정에 세울 사람들이 거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의 처벌은 이 시점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고 오직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끝)

[번역 : 김 영. 홍근수 목사님]

종군위안부. 강제연행문제와 유엔 =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문제 해결방식의 제안 =

토즈카 에츠로 변호사
(국제교육개발. 동아시아 대표)

1. 머리말

1) 필자는 일본의 변호사로서 20년간 활동해 왔다. 일본의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그러나 종군위안부. 강제연행과 같은 중요한 인권문제에 관해서 잘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래동안 아무것도 해 오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 초대받아 서울에서 강연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명예롭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1990년 6월, 일본 참의원 의원인 모토오카 쇼지치가 이 문제를 취급했을 때, 일본정부는 대일본제국군. 정부의 관여를 부정했다. 그래서 정대협의 강한 항의를 받고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에서도 큰 정치문제가 되었다.

1991년에는 한국에서 종군위안부의 생존자가 나타나고 증언함으로써, 대일본제국군. 정부의 직접적 가해행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역사학자가 자료를 발굴하고 일본군의 관여를 증명하였고, 이것이 크게 보도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증거와 종군위안부를 연행한 행위를 고백한 가해자의 증언,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동작업으로 축적된 「강제연행 진상 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究明의 결과가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일본인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이처럼 잔혹한 행위를 했는가」라고 반성을 하게 된 것이다. 다시 한번 사실究明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1992년 1월, 미야자와 수상은 한국의회에서 사죄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보상에 대해서는 일절 거부했다. 필자는 일본정부는 모든 중대인권침해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해야 하며, 일본인은 그것을 위해 최대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아래 동년 2월 유엔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2) 필자가 유엔의 NGO 국제교육개발/IED(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 Inc.) 동아시아 대표로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정의와 인도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밝혀진 사실에 기초한다면, 조선

인 종군위안부 및 근로정신대를 비롯한 조선인 남녀에 대해 대일본제국이 행한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은 인도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조약에 위반하고,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한다. 개개의 피해자가 일본에 대해 진상究明, 책임의 승인, 위령비의 건립, 완전한 보상을 수반하는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상 당연한 권리이다. 개인 배상청구권은 한국의 국가로서의 대일 배상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다. 일본이 성실하게 이 요구에 응해야만 정의와 인도에 따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일본인의 『자유.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민족의 『자유.민권』을 희생하여도 좋다」라는 사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1945년 포츠담 선언수락에 의하여 평화국가가 되는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신헌법의 제정만으로는 그 약속을 실시할 수 없다. 진실을 究明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므로서, 무엇이 일본을 대항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의 침략으로 몰아 세웠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것을 안하면, 일본은 다시 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닌가. 中坊公平 전 일본변호사 연합회 회장은 「대일본제국 시대의 일본에서는 일본의 국익실현을 위해서는 타민족을 희생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사상이 당연했다고 생각한다. 명치시대 일본의 자유민권가가 조선 병합을 정부에 요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인권』에 국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필자는 이 생각에 찬성한다. 이러한 「일본인 지상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여성은 종군위안부로서 몸과 마음을 일본병사에 바쳐서 당연하다, 라는 지, 「조선인 남녀는 일본인보다 가혹한 강제노동을 해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이 생긴 것이 아닐까. 비일본인도, 일본인과 똑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고유의 「인권」이 있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위해서 희생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가 과거 존재한 조선인 종군위안부.조선인 남녀의 강제노동 피해자의 강제연행 등의 노예화 행위에 대해,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일본인 지상주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현재의 일본인이 아직 「일본인 지상주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제로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일본인 지상주의」와 결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이 문제들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은 양 민족의 우호 뿐만 아니라 튼튼한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유엔에서의 종군위안부.강제연행 문제의 심의

1) 1992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필자는 IED를 대표하여 종군위안부.강제연행문제로 일본정부를 비판하여 유엔의 개입을 요구했다. 한국정부가 이 IED 발

언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다. WAC(War Amputation of Canada), 전쟁포로 학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성실한 개인보상을 안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다.

2) 1992년 5월, 유엔 인권소위원회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도 IED는 같은 발언을 했으며, 일본의 행위가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조약에 위반하는 노예로부터의 자유의 침해인 것을 강조했다. 또 나치스 독일의 인체실험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 보상에 관해서 유엔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실을 지적하고, 유엔의 NGO인 IAF(International Abolitionist Federation)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IED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 결과 동 실무회의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보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침해 피해자의 배상, 보상 및 원상회복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자」(반보벤 교수)에 제출하도록 유엔 사무국 총장에 요청하는 결의를 했다. 이것은 유엔이 인권문제로 일본에 대해 취한 역사상 처음의 행동이다.

3) 1992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는 IED는 전술의 국제법 위반을 거듭 강조하여 「국제법 위반은 시효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정부간 조약에 의한 배상처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가령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조약이 있어도 그것은 불가양(不可讓)의 인권을 소멸하는 것이 되어, 유스.코겐스(강행규범)에 위반하고 무효하다. 일본정부는 피해자에게 완전 배상해야 한다. 유엔이 중재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IAF, WCC, WAC, 리버레이슨 등의 유엔의 NGO도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으나, IED의 발언은 이들 NGO에게 지지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정대협외 국제협력위원회 신혜수 위원장(8월 10일), 전 종군위안부 황금주씨와 함께 정대협의 이효재 공동대표(8월 21일)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대표하여 제일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의 이상칠씨(8월 25일)가 리버레이슨을 대표하여 각각 발언한 것도 역사상 처음이었던 것이 아닐까.

인권소위원회는 노예제 부회 결의와 똑 같은 결의를 했다. 또 소위원회는 전술 특별보고자에게 내년 8월까지 상기 주제에 관한 유엔 원칙, 지침안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종군위안부에 관한 정보취급은 등 특별보고자의 재량과 결정에 위임되어 있다.

3. 일본의 대응과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

1) 1992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마음을 어느 정도 구체화 할 수 있는가」 검토한다고 했으나, 「법적 문제는 두고서,」라고 하면서 「배상」도 「보상」도 거부했다. 소위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의 제시는 WCC대표(정대협), 리버레이슨 대표(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 대표) 등의 NGO에 의해 명백히 비판, 거부당했다. 진상究明도, 책임의 승인도, 성실한 사죄도 없기 때문이다. 이 조치의 대상은 종군위안부 피해자에 국한되어 있다. 여자근로 정신대를 비롯한 노예적 취급을 받은 강제연행 피해자, 연합국 포로로서 학대를 받은 전쟁범죄 피해자, 그 이외의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문제가 해결하고 있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2) 1991년 12월,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의 피해자가 도쿄지방법 재판소에서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장은 일본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는 이유의 하나로써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소송은 일본인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강하게 제촉하는 정치적인 효과를 올렸다는 점과 일본의 법적 책임의 근거로서 국제법상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지적한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 앞으로도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일본정부에 대한 원고들의 비판은 계속될 것이며, 정치적 압력이 될 것이다.

「일본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의 구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필자는 직접적인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답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일반론을 말하겠다. 첫째로 일본의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요사건이면 최고 재판소의 결론을 받을 때까지 20년 걸린다.」고 해도 부정하는 변호사는 적다. 그래서 실효적 구제라고는 말할 수 없다.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조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본 건의 중요 쟁점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의 재판소는 국제법에 익숙하지 못하다. 특히 국제인권법에 의해 피해자가 승소한 실례를 필자는 모른다. 더구나 일본인을 철저히 비판하는 외국인 피해자가 원고인 본 건에서 일본인 재판관이 「완전히 공평」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원고인 한국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는 본 건의 해결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자 뿐만 아니다.

3) 일본의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究明을 하고 『전후보상법』과 같은 입법에 의해서 해결하자, 라는 요청이 일본의 민간단체들로부터 국회의원에게 모아지고 있다. 일본 사회당은 10월 14일, 미야자와 수상에 대해 「전후보상 조사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협력하도록 요구했다. 필자도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의한 해결에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민당의 장기 일당 지배체제는 선거에 의해서도 쉽게 변화할 것 같지가

않다. 피해자 구제를 주장하는 것은 야당이고 여당은 정부와 똑 같은 자세이다. 둘째로 주요 쟁점인 국제법은 여, 야당 모두 일본의 국회의원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분야이다. 셋째로 종군위안부 문제 이외에 다수국에 관련되는 많은 종류의 중대 인권 침해문제가 있고 극히 복잡하다. 국회에서는 일본국민 사이에서 쉽게 합의를 얻기 힘든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본 건에서, 진상究明, 법적 책임의 승인, 보상금액 등 많은 곤란한 쟁점에 대해, 조기에 국회의 합의가 얻어질 것인가. 놓여진 장애는 아주 클 것이다.

4. 그렇다면 이상 검토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의한 구제 이외에 이것과 병행하여 진행할 「제 4의 길」이 있는 지가 문제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하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가를 해결방식에 따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1) 시간이 없다. (피해자가 젊어도 65세이다.)
- (2) 다수국에 걸친 피해가 있다.
- (3) 피해자의 수가 많고 전모가 밝혀지고 있지 않다. 생존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 (4) 문제는 국가간의 배상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간에서 해결을 못한다. (다만 공화국과의 교섭과 대만과의 관계에서는 국가간의 배상문제가 남아 있다.)
- (5) 피해자 개인으로 부터의 청구이다.
- (6)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노예로부터의 자유의 침해, 강제노동 조약 위반, 기타 국제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다.
- (7) 유스, 코겐스(강행규범)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다.
- (8) 피해자 측은 진상구명, 책임승인, 위령비 등 기념사업, 교과서의 기재 등 교육, 계몽에 의한 예방조치, 성의있는 사죄와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 (9) 피해의 종류가 많다.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전쟁포로 등 대일본제국군, 정부에 의한 피해로부터 일본군측에 속하는 군인, 군속의 은급문제나 군포 등 재산문제까지 있어 피해의 질, 정도, 법적, 도의적 책임의 내용, 정도, 적용해야 할 법규, 국내법, 국제법이 다양하다.
- (10) 개별 피해의 입증도 곤란하다. 오래된 것과 증거인멸도 있다.
- (11) 방대한 피해이기도 하고 납제자의 부담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로서도 재판소송 권위가 있는 제 3자의 판단 내지 입법, 예산화 등의 국회의결 없이 재정적 지출을 못할 것이다.
- (12) 국민사이에서 사실 관계가 명백하지 않고 전쟁범죄를 일본자신에 의한 추구, 처벌이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성이 없고 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없다.

5.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1) 1992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IED, WCC, WAC, 리버레이슨 등 NGO와 유엔의 중개에 의한 해결을 요구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 하는가가 문제인데, 유엔에 의한 의결은 상기 제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2) 필자는 일본정부가 유엔에 대해서 이하의 요청을 함으로써 유엔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피해자(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전쟁행위에 의해서 중대인권침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으로서, 이러한 해결방식에 의한 구제를 원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일본에 관한 국제중대인권침해 재판소」의 재정에 따른다는 자)와 일본국간의 분쟁에 관해서 피해자로 부터 제소가 있었던 경우는 제소 사건에 관한 중재 재판소로서 「일본에 관한 국제중대인권침해 재판소」를 설치해달라, 라고 요청하는(일본은 동 국제 중대인권침해 재판소의 재정에 따른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한다)것 부터 출발한다. 동 사무총장은 동 재판소를 창설하는 것을 일본으로 부터 일임받는다.

3)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무총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이하와 같은 「일본문제 처리를 위한」 국제 중대인권침해 재판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일본의 요청에 의해 이것을 설치한다.
- ②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은 사무총장이 국제 사법재판소 소장에 의뢰하여 행한다. 동 소장은 상설 중재재판소의 재판관 명부에 게재되어 있는 자 중에서 10명의 후보자를 지명하여 사무총장이 그 중에서 5명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단 일본인 및 일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다.
- ③ 재판수속은 동 재판소 재판관 회의가 결정한다.
- ④ 피해자는 동 재판소의 판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재판소에 대해 직접 구제 제소를 할 수 있다. 제소자는 제소 및 청문에 있어서 유엔 공용어가 아닌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빈곤한 피해자(직접의 피해를 받은 자 및 그 가족)는 재판소의 부조에 의해 변호사의 원조,대리를 받을 수 있고 청문의 기회를 보증한다. 재판소는 순회하고, 필요한 장소에서 법정을 개정할 수 있다.
- ⑤ 재판소는 검증, 증인심문, 기타의 증거 조사를 필요한 장소에 출장하고 할 수 있다. 동 재판소는 공개심리를 하고 신속한 공개판결을 언도한다.
- ⑥ 재판소는 재판의 기준으로서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 38조의 「재판기준」 및 「衡平과 善」에 비추어서 판결한다(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법적

책임이 없어도 형평과 선의 관점에서 보상 등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판결서에는 인정사실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판결에서는 국제법 위반의 중대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을 인정할 때 또는 형평과 선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사죄, 기념사업, 금전보상, 기타 배상,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일본정부에 대해 명령할 수 있다.

- ⑦ 재판소는 당사자의 제소,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동 이사회에 대해, 국제 사법재판소의 관고 의견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⑧ 재판소의 판결은 양 당사자간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⑨ 사무총장은 재판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 경비로서 지출하는 것 외에 동 재판소 사무국 설치 등 모든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전 비용은 일본정부가 부담한다. 피해자는 허위의 제소. 기타 여기에 준하는 악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제소가 아닌 한 제소인이 패소해도 소송비용의 부담은 요구하지 않는다.
- ⑩ 출소기간에는 기한을 두지 않지만 재판소가 발족한 후 약 3년 이내를 시험 케이스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종류의 사건에 대한 해결방식을 확립하고, 그 후 3년 이내에 대부분의 사건의 처리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동 재판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비용으로서 당면 최소한도 60억 엔 정도의 지출을 생각한다.

4) 이러한 재판소는 현재 없다. 이것을 실제로 만들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이 하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 ① 제도의 본질은 중재제도이며 국제법상도 국내법상도 옛날부터 인정되고 있다. 중재제도가 가동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제 3자인 중재 재판관의 재정에 따른다고 합의해 성립된다. 이러한 국제 중재재판소가 생긴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일본의 재판소를 이용해도 좋다. 또 일본국회에 청원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것도 자유이다. 피해자는 구제를 위해 더 우수한 쪽을 택할 것이다. 일본 국내법의 쟁점이 문제가 될 때에는 국내 구제수속을 다 하고 그 위에서 국제적 구제기구에 구제를 요구하게 되지만, 본 건에서는 국제법상의 제문제가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 구제수속을 다할 필요는 없다. 희망한다면 직접 국제수속으로 구제 제소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재판소 수속에 사용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직 생존중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② 유엔 헌장 33조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중재수속 등의 평화적 해결수단을 이용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국가간의 중재수속의 이용

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국간 조약에 의해 상설 중재 재판소까지도 설치되어 있다. 국제투자의 해결을 위한 국가와 사적 법인격 밖에 갖지 않는 기업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취급하는 상설 중재기간이 생기고, 기능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하고 싶다.

- ③ 구주(歐洲) 인권재판소, 미주(美洲) 인권재판소, 국제인권 규약위원회 등 피해자 개인으로 부터의 제소를 받는 국제 인권기구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고, 개인의 국제법상의 지위는 확고히 되어 오고 있다. 최근, 이라크 보상문제 유엔 위원회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필자의 안보다도 더 철저한 보상조치가 실현되고 있다. 이미 국제형사 재판소까지 제안되고 있다. 현재 유엔 인권기구의 검토시기이며, 1993년 6월에는 유엔 세계 인권회의가 예정되고 있으며, 대담하게 보이는 제안도 결코 당돌한 발상이라고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전기 특별보고자 반 보벤 교수의 보고서에도 국제적 인권재판소의 제안이 있는 것 등을 미루어 보아 이 기구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 ④ 「옛날이면 몰라도 현재는 일본정부가 요청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러 유엔 인권 전문가들도 시사하고 있으며, 유력 유엔 NGO 관계자의 지지가 있는 것도 든든하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NGO가 이러한 구제기관의 설치를 유엔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 이외에 모든 당사자가 납득하고 신속·정확하게 전면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5) 최대의 문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다. 좋은 해결안도 일본정부가 거부하면 실현할 수 없다. 앞으로 일본을 포함한 관계 각국의 민간단체, 정당, 정부 등이 이 제안을 지지하는가 어떤가에 의해 일본정부의 태도가 정해질 것이다.

필자는 일본정부는 스스로 유엔에 이러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도(조약비준에 필요한 것과 동등한)결의를 해야 한다. 일본국민도 이 국제 중재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지출을 하는 것을 찬성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개개의 구체적 해결에 대해 하나 하나 상세한 합의를 피해자측과 교섭하거나 오래동안 국내 재판소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일본의 국회와 정부가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법적 기관이 「법적 책임이 있다」 또는 「형평과 선의 관점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여기에 따른다는 해결방식에 합의하는가 어떤가 만을 결단하면 좋다.

정부는 「일본에 국제법상 책임이 있다」, 「형평과 선의 관점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국제기관이 판단해도 아직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인가. 그것이 근본 문제이고 이 점만 충분히 의논하면 좋다. 그러나 지불 능력의 점에서 「년간 1조 엔 밖에 지출할 수 없다」 등의 재정적인 배려는 하면 좋다. 금액이 년 1조엔을

넘을 경우는 연기해서 연부식으로 이행해도 좋다고 해야만 현실적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점에서 상기의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다. 일본은 「국제법에는 따르고 인도적인 책임도 진다」고 말해야만 정의있는 태도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곤란한 문제가 전면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평가도 높아질 것이다. 「교활하다. 잔혹하다」라는 일본 이미지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휴머니티, 인간의 존엄과 원칙에 맞는 해결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

디오 반 보벤 (Theo van Boven)
(네델란드 린버그대학 국제법교수,
UN 인권소위 배상문제 특별보고관)

1. 희생자의 관점

국제적, 국가적 수준에서 인권의 중대한 침해의 희생자들의 고통은 종종 무시되는 것 같다. 많은 사회가, 또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희생자들의 고통을 주변적인 문제로 축소해왔다. 그들은 관련된 문제들을 다소 당황스럽고 불편한 것으로 여긴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마 의아해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역사와 경험은 우리에게 일정 정도 설명을 제공해준다. 국제적 수준에서, 희생자들의 고통은 종종 국제적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주로 국내적인 것이므로 국가적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가적 수준에서는 대체로 과거에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 많은 사회가 자신의 국민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가해진 불의와 악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게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많은 사회에서 과거와 맞붙는 것은 분열을 초래하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몇몇 집단, 특히 정치적 지도자, 군대등을 적대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에 행해진 잘못에 대한 배상이 사회의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와 국제관계에서 인권의 침해는 너무도 큰 것이어서 그 문제를 다룰 법적, 물질적 수단이 부족하거나, 혹은 전혀 부적절한 경우들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와 기관, 정치조직, 그리고 개인들은 종종 과거에 잘못이 행해졌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은 많은 장애들에 직면한다. 이러한 장애들은 그 본질에 있어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심리적인 것이며, 때로는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다른 한편, 희생자의 관점이 때로는 수십년의 무시와 침묵의 시간 끝에 주목을 끌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희생자의 고통이 민간단체들과 다른 관심 있는 집단들에 의해 주장되어졌다. 실제로 UN 인권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위원회의 승인하에, 특별 보고관 (Special Rapporteur)에 다음의 사항들을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인권과 자유 침해의 희생자들의 배상, 회복에의 권리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존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인권조직의 관련 결정과 견해들을 고려한다. 이 글에서 나는 이들 각각을 살펴볼 것이다.

- 인권, 범죄방지, 범죄재판, 인도주의적 법규와 관련된 국제규약 (2부)
- 몇몇 국제인권기구의 관련 결정과 견해 (3부)
-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에의 권리와 관련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제 (4부)
- 원칙과 방향의 정립 (5부)

2. 관련된 국제 규약

A. 국제 인권 규약 (세계적, 지역적 인권 기구)

세계적, 지역적 인권기구들은 모두, 개인에게 가해진 인권침해의 행위에 대해 모든 개인이 적절한 국가 사법재판소에 의해 "효과적인 구제"의 권리를 가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은 [세계인권선언]의 조항 8 에도 포함되어 있다. "효과적인 구제"의 개념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3)(a)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폐지 선언]의 6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몇몇 인권기구들은 더 구체적으로 "법에 따라 배상받을 권리" ([미국 인권 협약] 10조), 혹은 "적절한 배상에의 권리" ([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 21조(2))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인 것은 '배상에의 권리를 강제할 수 있는'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9조(5)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규약]의 5조(5)이다. 이와 비슷하게, [고문 및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 비인격적 대우나 처벌 금지규약]은 고문의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할 것과 "가능한 한 충분한 회복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에의 권리를 강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B. 범죄방지와 범죄재판에 관한 규범

범죄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보조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들이 [범죄희생자와 권력남용에 대한 기본적 정의 원칙 선언] (1985년 11월 29일의 총회결의안 40/34)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선언]은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 1) 희생자들은 그들이 당한 해악에 대해 즉각적인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 배상을 요구함에 있어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 3) 범죄자나 제3자들은 희생자나 그들의 가족 혹은 부양가족들에게 공정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한 배상은 재산의 반환, 혹은 손해나 분실에 대한 재정적 지급, 희생의 결과로써 초래된 비용에 대한 지급, 서비스의 제공과 권리의 회복을 포함해야 한다.
- 4) 배상이 범죄자나 다른 원천으로부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가 재정적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5) 희생자들은 필요한 물질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선언] 또한 정부가 범죄사건에서 여타 형벌에 덧붙여, 배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행, 규제, 법률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 9).

C. 국제적 인도주의적 법규

[지상전(地上戰)의 법과 관습에 대한 헤이그 협약] 3조는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협약 당사자가 배상을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차 헤이그 협약]의 조항 41도 개인들에 의한 휴전조항의 위반시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정 4개안]도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행위의 경우 "어떠한 고위의 협약 당사자도, 그 자신이나 다른 고위의 협약 당사자가 초래한 책임으로부터 자신들을 면제할 수 없다." 즉, "의도적인 살인이나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취급—신체와 건강에 고의로 막대한 고통과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생체실험을 포함하여—그리고, 군사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으며 불법적이고 마구잡이로 행해진 재산의 몰수와 파괴등의 경우"와 같은 심각한 위반행위의 경우이다.

[전쟁포로의 처리에 관한 제네바 협정] 68조는 전쟁포로의 배상요구에 관한 구체

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전시(戰時)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55조는 점령권력이 "어떠한 징발된 물자에 대해서도 공정한 가치가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정서 I]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정] 추가 의정서이며, [국제 군사갈등의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의정서])는 91조에서 협약이 나 이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한 측은 "배상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국제인권기구의 관련 결정 및 견해

A. 인권위원회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의 임의 의정서]하에서, 인권위원회는 협약에 제시된 어떠한 권리든지 국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로부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임의 의정서의 네째 문단, 조항 5에 "견해"로써 나타나 있다. 위원회가 협약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규정에 대한 침해를 발견한 후에는, 국가측에 침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배상의 근거는 협약의 세째 문단, 조항 2인데, 이에 따르면 각 국가측은 협약에 규정된 바 대로의 권리나 자유가 침해당한 사람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배상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규정은 협약의 다섯째 문단, 조항 9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체포나 억류의 희생자인 사람은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섯째 문단, 조항 14는 오심의 결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규약을 검토해볼때, 희생자들이 받도록 되어 있는 적절한 배상, 유사한 침해의 재발 방지에 목적을 둔 배상과, 위원회의 견해에 의해 요청된 배상과 관련하여 관련국가들에 의한 사후검토의 문제 사이에는 명확한 연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리나 자유를 침해받은 사람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국가측에 있음(규약의 세째 문단, 조항 2)에 관하여, 위원회는 국가가 침해를 배상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과 아울러, 요청되는 배상의 구체적인 종류를 침해의 성격과 희생자들의 상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권위원회는 국가측이 다음의 의무하에 있음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

- 1) 진상을 조사할것.
- 2)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
- 3) 책임자로 판명된 사람들을 재판할것.
- 4) 희생자들에게 규약의 규정과 보장에 따른 취급을 할것.
- 5) 희생자들에게 의료적 조치를 제공할것.
- 6) 희생자들과 그(녀)의 가족에게 배상을 지급할것.

배상을 지급할 의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1) 희생자(실종자) 또는 그 가족에게 그가 겪은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배상.
- 2) 남편에게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 배상.
- 3)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에게 적절한 배상.
- 4) 고통을 초래한 잘못에 대한 배상.
- 5) 희생자가 비인간적인 취급으로 인하여 겪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와 고통에 대한 배상.
- 6) 유족에 대한 배상.

이러한 측면에서 두가지 관찰이 가능하다. 첫째는, 위원회의 관점에서 볼때 배상의 양이나 성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신체적 상처나 손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나 손상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종의 경우에, 위원회가 가족

성원들 자신이 겪은 고통과 괴로움때문에 그들이 배상을 받는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성원들은 그 희생자 당사자에게 가해진 상처때문에 배상을 받는다고 보는 것인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배상의 방지적 측면은 인권위원회가 국가측으로 하여금 "유사한 침해가 미래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빈번히 요청하는 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규약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국가측이 곧바로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생명에의 권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예방적 조치로, 관련 국가측이 법률을 개정하여 그 권리를 마땅히 보호하도록 촉구한다.

B. [미대륙간(美大陸間) 인권 법정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미대륙간 인권 법정]은 혼두라스에서의 무력안보군대에 기인한 실종과 관련한 몇몇 사건들을 다루었다. 사건의 막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Velasques Rodriguez 사건에 대한 법정의 판결에 특별히 언급하겠다.

[미대륙간 법정]은 [미국인권규약]의 제1조에 포함된 의무를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즉, 규약에 공인된 자유와 권리를 그 관할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행사하도록 국가측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의무의 결과로서, 국가는 규약에 공인된 권리의 어떠한 침해라도 방지, 조사, 처벌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시도하고, 침해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보장된 대로의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국가는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권내에서 행해진 침해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며, 책임자를 규명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며, 희생자에게 확실히 배상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

이와 같은 [법정]의 접근방식은 인권위원회의 접근과 매우 유사한데, 논의된 대로 방지의 의무와 회복의 의무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방지적 조치가 마땅히 우선권을 갖고 강조되는데, 이는 한 뇌의 방지가 한 말의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법정]이 언급하고 있는 배상의 수단들중, 범해진 침해의 조사와 죄인의 처벌, 적절한 배상의 지급등이 차례로 언급되어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상은 사회전체, 책임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해 완전한 정의가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배상의 조치들은 정의 실현 정책의 부분을 형성한다.

4.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의 권리와 관련하여 비처벌의 문제

중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에의 권리에 관한 어떠한 연구라도 범죄자가 처벌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희생자와 그의 가족, 부양가족들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지급하는데 실패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관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에게 대해 그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법이 허가하거나, 사실상의 비처벌이 유행하는 많은 경우, 희생자들은 배상을 요구하고 받는 것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된다. 사실상, 일단 국가 당국이 진상을 조사하여 범죄의 책임을 지우는데 실패하면, 희생자나 그들의 친지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얻기 위하여 효과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인권규약을 맺은 국가측이 이러한 인권규약상의 의무를 따르도록 조치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법적 기구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취해질 조치들을 통일성있고 일관되게 규정해 놓았다. 이 통일되고 일관된 행동규범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관,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다. 특별히 [미대륙간 인권 법정]의 유명한 주목할 만한 결정인 Velasques Rodriguez 사건은 예의 통일되고 일관된 방침을 재확인시켜 준다. [미대륙간 인권위원회]는 이 판결에 상당히 의존하여, 우루과이의 1986년 사면법이 군부통치기간중 인권을 침해한 공직자들에게 사면을 내린 것은 [미국 인권규약]의 1조, 8조, 25조에 위배된다고 8명의 청원자들의 사례에서 결론지었다. [미대륙간 위원회]는 1991년 10월 4일자 보고서에서, 해당 국가가 사면법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과거의 사건에 대해 진실을 수립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 조사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원회]는 Velasques Rodriguez 사건에 대한 [법정]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재차 반복하였다. 즉, 국가가 조사하지 않거나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침해가 처벌되지 않고 희생자는 배상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국가가 관련 권리의 충분하고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기로 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대륙간 위원회]는 정부가 청원자들에게 그들의 침해된 권리에 대하여 공정한 배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UN 실무 그룹]이 비처벌에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취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실종의 현상에 기여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비처벌일 것이라고 적고 있다. 민간인 이견 군인이건간에 인권침해의 범죄자들은 법정에 불려서지 않는 한, 더 더욱 무책임해진다. [실무 그룹]은 더 나아가, 비처벌은 또한 희생자들로 하여금 자구적 상호 도움의 형태에 의존케하며 법에 의하지 않고 멋대로 제재를 가하도록 해, 이것이 다시 폭력의 악순환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비처벌이 만연하는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에서는 중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의 권리는 환상이 되기 쉽다. 정의로운 제도에서는, 희생자의 권리를 고려한다면 동시에 범죄자들의 중대한 과오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성격을 갖는 많은 장애들로 인하여 희생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유사한 요인들이 비처벌과 관련하여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비처벌과 배상—에 대해, 국가공동체는 정치적 권리(불편)와 존재이유(raison d'etat)에도 불구하고 국제 법률기구에 의하여 확증된, 상당히 명확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였다. 국제법률기구에 의한 이러한 기준과 결정이 준수되도록 계속 주장하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우리의 의무이다.

5. 원칙과 방향의 정립

나의 확고한 희망과 바램은 UN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의 배상에의 권리에 관한 연구에 근거하여 일련의 원칙과 방향을 채택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채택되는 그러한 원칙과 방향은 희생자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줄 것이며, 그들이 배상에의 요구를 제시할 때마다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UN은 1990년대, 즉 현재의 천년의 마지막 10년을 [국제법의 10년]으로 선포하였다. 원칙과 방향이 이 10년의 틀내에서 채택된다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과 방향의 충분한 윤곽을 제시할 때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중요하고 관련이 있는 그러한 몇몇 규정들을 언급하겠다.

행위자와 책임의 수준

- 원칙의 문제로서 국가는 인권침해를 배상하고 희생자들의 배상에의 권리를 실현하게 할 책임을 갖는다. 국가들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인권규범을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정부는 중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법, 제도, 정책등을 갖춰야 한다.

- UN과 세계적, 지역적 수준에서의 다른 정부간 조직들은 적절한 고려와 국가적 수준에서의 배상의 수행을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침해의 형태

- 어떠한 인권의 침해도 희생자측에 배상에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현재의 목적으로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라는 개념은 적어도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대량학살, 노예제 및 노예제와 유사한 처사, 즉결 혹은 임의의 처형, 고문, 실종, 임의적이고 장기적인 억류, 조직적인 차별.

희생자

- 배상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원칙은 중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의 희생자들의 필요와 요구이다.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는 모든 기관과 기구들은 희생자의 관점을 생각하고 희생자들이 종종 그들에게 가해진 잘못때문에 장기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희생자의 개념을 정하기 위해서는, [범죄희생자와 권력남용에 대한 정의의 기본 원칙 선언 (1985년 11월 29일의 총회 결의안 40/34)], 특히 [선언]의 1, 2 문단의 다음의 구절들에 주목해야 한다. "희생자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상처,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이나 기본권의 상당한 침해를 포함하여 손해를 당한 사람..." "희생자라는 용어는 또한 직접적인 희생자의 직계가족이나 부양가족과, 고통중에 있는 희생자를 돕거나 희생을 막기 위해 개입함에 있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배상의 형태

- 배상은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미래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수단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상은 적절하고 공정해야 한다.

- 배상의 형태로서 배상금은 현금등으로 지불되어야 하거나 다른 종류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후자에는 건강, 의료지원, 고용, 주택, 교육, 토지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상은 적절한 상황이나 경우에 있어서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거나 무시된 사람들과 집단들의 본질적인 욕구를 긍정적인 행위에 의하여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의 상당한 재배분을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이 범주는 배상의 가치가 화폐로 표현되는 그러한 배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 비화폐적인 배상은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 평화의 대의에 봉사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 1) 진실을 충분히 공적으로 규명하고 사실들을 확증할 것.
- 2) 범해진 침해의 책임을 공적으로 인정할 것.
- 3) 책임자로 판명된 사람들을 재판할 것.
- 4) 희생자와 그들의 친척, 친구, 증언자들을 보호할 것.
- 5) 기념물을 건립하고 희생자에게 경의를 표할 것.
- 6) 희생자들의 사후복지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희생자를 돕기 위한 인원을 양성할 것.
- 7) 다음과 같은 조치들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할 것.
 - 안보군대를 특히 민간의 권한하에 둠으로써 면밀히 통제할 것.
 - 군사재판의 권한을 제한할 것.
 -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할 것.
 - 법률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 억류 등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안보군대와 법 집행 공직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할 것.

절차와 기구

- 모든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게, 책임자를 재판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배상을 받도록 할 빛을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법적 체계는 그러한 문제들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범피자들을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도 국가는 조사를 계속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요구를 해결하는 절차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희생자들의 필요를 존중하고 공정성과 정의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 중대한 인권침해의 배상에 관련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인 법령에 구애받아서 안된다. 그들은 신속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아무도 배상에의 요구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된다.

-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센터나 기구의 설립은 인권의 보호에 유용한 측면을 부가할 것이다. 그러한 센터나 기구는 진실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관련된 국가적 경험에 대한 정보, 법, 연구물, 기타 다른 자료들을 수집하고, 경험을 교환하고 비교하며, 교훈을 얻으며 지식의 축적을 쌓도록 도와야 한다.

6. 결론적인 의견

과거의 인권유린에 대한 배상은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권력남용과 범죄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에게 행해진 손상과 불의를 인정함을 함축한다. 배상은 또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이 명백히 설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배상은 보다 광범한 전략과 정치적, 사회적, 범죄적 정의의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한 정의는 비처벌에 반대하며 국제인권기구에 의해 재차 제시되었듯이, 진상조사와 범해진 범죄와 남용의 책임자들을 재판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배상은 정의를 실현하고 고통을 초래한 과오를 수정할 뿐만 아니라, 방지적 전략과 정책의 일부이다. 반복해서 국제인권기구는 배상의 방지적 측면과, 방지할 의무와 배상할 의무간의 밀접한 연계를 강조해왔다. 중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목적의 정책을 고안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위로와 배상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본질적이다. 그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막대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은 더욱 본질적이다.

(번역: 이난희 국제협력위원)

위안부연표

연 대	위 안 부	일 반
1931. 9. 18		關東軍、柳条湖사건 奉天점령 (만주사변)
1932.	일본군부대의 上海주둔증원에 의해 이들 병사의 위안기간으로 해군위안소를 설치 (調7-43)	상해사변勃發(1.28) 「만주국」 건국선언(3.1) 關東軍、熱河省점령
1933. 3.		
7. 15	熱河, 요리점여성의 8할은 조선여성, 하루에 병사4,50명 상대함 (鴨)	
8. 4	佳木斯, 일본인 在留 약 100명, 그 중 娘子軍內鮮 35명 (新)	
10. 18	齊齊哈爾의 예작부 259, 여급 119, 여중 58, 仲居 32 (滿)	
29	熱河省 수도承德의 10월상순 戶口조사, 조선인작부 91, 여급 2 일본인예기 23, 작부 4, 仲居 1, 여급 36 (奉天)	
1934. 1. 10	전년 12.1 현재, 囚徒의 요리육내지인 11, 조선인 10, 만인 7, 카페 내지인 14, 조선인 3 (滿)	
8. 30	新京,接客부 출신지 「만주사변을 계기로 하여 조선미인의 滿州花街진출은 한층 눈에 띄며 제2위」 제1위 長崎縣 171, 제2위 조선 168, 제3위 福岡縣 110 (新)	
1935	1934년의 上海邦人諸영업표중 「해군위안소」 同연말 현재 14 (調23-39)	
1936	12월말, 上海邦人諸영업조사표중 「요리점, 예기, 置屋」 영업자 23, 「해군위안소」 영업자 10 (調23-41)	
36 未현재	在 上海 總領사관管轄(?) 해군위안소 10채, 작부수 131명 (내지인 102명, 조선인 29명) 이 중 7채은 해군하사병전문, 작부 건강진단은 주 2회 (調11-40)	
1937. 7.		蘆溝橋사건, 중일전쟁전쟁
9.	조선총독부에 군대요원의 여성공출을 의뢰함 (年)	군민정신총동원운동
11. 20		일본군, 大本營설치
12. 13		일본군, 남경점령, 남경대학살
未현재	中國天津 總領사관塘沽出張所管轄, 요리점영업자내지인 5명, 조선인 3명, 예기 13명, 작부내지인 15명, 조선인 54명 週 1회, 건강진단 실시 (調7-47)	시작
12. 12	上海, 在留 조선인직업 「군대위안소」 1 (調24-49)	
1938. 1.	上海·楊家宅 陸軍直營 위안소 설치	
20	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 위안설비는 兵站경영과 軍直부대경영의 계 2개소 (調5-53)	
2.		육군특별지원령

3. 4 陸支密受第2197号 「군위안소 종업부등 모집에 관한 건」
 4. 1 濟南其他膠濟鐵道沿線도항자취급에 관한 건, 황군위안부
 25 의 작부모집등을 위해 귀국하는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교부
 에 관해서 (調14-2)
 7. 13 歩兵第4 1連隊, 「성적위안의 설비」 제안 (陣)
 27 歩兵第九旅團, 현지에서의 강간多發을 우려하여 「속히성적
 위안의설비」를 정비할 것을 제안 (陣)
 9. 28 上海總領事代理, 漢口군대위안소개설을 위한 진출을 우선적
 으로 인정 (調21-4)
 10. 21 27
 11. 8 南京, 11.1현재, 통계표중 「특수위안소」 내지인호수15, 남대
 人42, 여大人26, 여小人1의 계69, 조선인호수9, 남大人26, 남小
 人1, 여大人8, 여小人2의 계37, 「同就業의 특수부녀」 내지인
 여大人107, 조선인大人143 (調23-34-1)
 25 第二軍 (漢口·漢陽) 위안소개설 (二軍) (調6-62)
 12. 1 중국, 九江在留邦人557명, 그 중40%는 특수위안관계의 특수
 부인이며, 군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있는 상태 (調7-50)
 12末 杭州, 邦人직업조사표중 「군대위안소」로서 남4, 「예기」15
 「작부」21 (調24-48)
 1938. 未현재 上海, 貸席11채 (내지군위안소7채포함) 抱작부191명 (내지
 인171명, 조선인20명) 해군위안소7채은 海軍下士官兵專門,
 작부건강진단은 陸戰隊및 上海總領事官警察官吏감독하에서
 매주1회실시, 기타上海總領事官管内에 육군위안소임시작부
 300명 (調7-43)
 1939. 1. 11 新竹, 12월분 「南支위안소就業婦」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
 여권발급을 한 자로서 南支방면에 내지인31, 조선인22의 계
 53, 「右所요리옥경영」로서 南支방면에 내지인1, 조선인2의
 계3, 「右所종업원」으로서 南支방면에 내지인5, 본도인4의
 계9 (調16-14-1)
 17 台中, 12월중 「위안소종업원」으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
 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내지인2, 조선인57, 본도인16,
 계132명 (調15-11-1)
 20 台南, 12월분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관계」로서 南支방
 면에 내지인1, 조선인22의 계23 (調16-13)
 2. 台東庁, 도항목적조사표중, 「위안소종업부」로서 北支방면
 에 累計1 (調16-15-1)
 3 漢口, 군위안소20채 (調21-5)
 7 澎湖庁, 1월분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개설을 위해 및

국가총동원법 공포

일본군, 廣東점령
 일본군, 武漢三鎮점령

傭人」으로서 南支방면에 내지인4, 조선인3, 본도인1의 계7,
 「위안소의 작부」로서 南支방면에 내지인17, 조선인10의 계
 27 (調16-16-1)
 10
 3. 24
 4. 中國의 廣東·河南·佛山·海口의 「위안소ノ配當及衛生狀
 態概況」: 군통제하의 위안부약850명, 各部隊郷土에서 부른
 자 약150명, 波集團사령부 「戰時旬報」
 4.
 4. 南支那23군사령부, 所管警備隊長 및 憲兵隊의 감독아래서
 위안소개업을 허가 (調4-2)
 10 台北, 2월중 「위안소관계」로서 신분증명서 및 외국여권을
 발급한자, 上海방면에 내지인9, 조선인3, 본도인4의 계16, 南
 支방면에 내지인170, 조선인1, 본도인41의 계212
 (調15-10-3)
 12 高雄, 3월분 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관계」로서 南支방
 면에 내지인58, 본도인17의 계75 (調16-12-3)
 18 台中, 3월중 「위안소종업원」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조선인3의 계3, 累計139명
 (調15-11-4)
 19 新竹, 3월중 「위안소就業」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자, 南支방면에 내지인2, 조선인1의 계3 (調16-14-3)
 24 台北, 3월중 「위안소관계」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자, 南支방면에 내지인12, 본도인1의 계13
 (調15-10-4)
 5. 台東庁, 도항목적조사표중, 「위안소종업부」로서 南支방면
 에 累計1 (調16-15-4)
 9 澎湖庁, 4월분 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개설」로서 南
 支방면에 내지인3, 「위안소종업원」로서 南支방면에 내지
 인17, 계17 (調17-16-2)
 12 高雄, 4월분 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관계」로서 南支방
 면에 내지인2, 조선인12의 계14 (調16-12-4)
 21 台北, 4월중 「위안소관계」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자, 上海방면에 내지인2의 계2, 南支방면에 내지인23
 조선인5, 본도인3의 計31 (調15-10-5)
 6. 1 九江, 6월1일현재, 在留民직업별통계표중 「위안소」 내지인
 호수10, 남大人37, 여大人28, 여小人1, 계66, 조선인호수11, 남大
 人20, 남小人1, 여大人4, 여小人1, 계26, 「특수부인」 내지인여
 大人125, 조선인여大人99, 대만인여大人1 (調23-34-2)
 6. 中支방면에 황군의威嚴을 상하게하는 강간을 방지하는 목적

일본海軍, 海南島점령開始
 軍用資源秘密保護法

식량의 「공출」·제도강행
 조선인에게, 창씨개명실시

6. 12 台中, 5월중 「위안소종업원」 으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본도인7의 계7, 累計147명 (調15-11-6)
- 19 台北, 5월중 「위안소관계」 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자, 上海방면에 내지인8, 본도인4의 계12, 南支방면에 내지인18, 조선인3, 본도인8의 계29 (調15-10-6)
- 26 麻生徹男軍医少尉 「화류병의 적극적 예방법」 제출
- 30 独立山砲兵第3連隊, 위안소를 증가시켜 정신적위안을 시키도록 지도를 구함 (調20-61)
7. 7 15 台北, 6월중 「위안소관계」 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자, 上海방면에 본도인2의 계2, 南支방면에 내지인11 조선인4, 본도인10의 계25 (調15-10-7)
- 18 台中, 6월중 「위안소종업원」 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累計147명 (調15-11-7)
- 25 高雄, 6월분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관계」 로서 南支방면에 내지인3, 본도인15의 계18 (調16-12-5)
- 28
8. 7 9 九江, 8월1일현재, 在留民직업별통계표중 「위안소」 내지인 호수8, 남大人27, 남小人2, 여大人10계39, 조선인호수5, 남大人15, 여大人6, 계21, 「특수부인」 내지인여大人90, 조선인여大人68 (調23-34-3)
- 9 8月1日현재, 南昌在留民직업별통계표중 「특수위안소」 내지인 호수3, 남大人5, 여大人3계8, 조선인호수8, 남大人19, 여大人9 여小人1계29, 「同就業부인」 내지인여大人8, 조선인여大人94 (調23-34-4)
- 11 台中, 7월중 「위안소종업원」 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조선인5의 계5, 累計152명 (調15-11-8)
- 22 高雄, 7월분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관계」 로서 南支방면에 내지인17의 계17 (調16-12-6)
- 22 新竹, 7월중 「위안소종업원」 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자, 南支방면에 내지인1, 조선인4, 본도인4의 계9 (調16-14-4)
9. 1 9.

국민징용령 (勅令)

內務·厚生兩次官通牒

「조선인노무자 내지이주에 관한 건」 에 기초한 「조선인 노동자 모집요강」

제2차세계대전 개시 위(7.28)에 의거하여 「모집」

- 12 新竹, 8월중, 「군위안소」 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내지인6, 조선인5의 계11(調18-21-1)
- 13 台北州, 도항목적조사표중, 「위안소관계」 로서 南支방면에 내지인3, 조선인1의 계9 (調17-17-1)
- 18 高雄, 8월분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관계」 로서 南支방면에 내지인17의 계17(調18-22-1)
10. 12 台中, 9월중의 도항목적조사표중, 「위안소종업원」 으로서 南支방면에 조선인10의 계10 (調17-18-1)
- 12 新竹, 9월중, 「군위안소」 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내지인1, 조선인1의 계2(調18-21-2)
- 13 台北, 9월중, 「위안소관계」 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내지인9, 조선인20, 본도인1의 계30 (調17-17-2)
- 14 花速港, 9월중, 「위안소종업원」 으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累計1 (調18-20)
- 14 高雄, 9월분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관계」 로서 上海방면에 조선인1의 계1, 南支방면에 내지인11, 조선인1, 본도인20의 계32 (調18-22-2)
11. 13 新竹, 10월중, 「군위안소」 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내지인1, 조선인4의 계5(調18-21-3)
- 15 台北, 10월중, 「위안소관계」 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내지인16, 조선인14의 계30 (調17-17-3)
- 16 高雄, 10월분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관계」 로서 南支방면에 내지인8, 조선인14, 본도인1의 계23 (調18-22-3)
12. 9 台中, 11월중, 「위안소관계」 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내지인16, 조선인14의 계30 (調17-17-3)
- 11 台北, 11월중의 도항목적조사표중, 「위안소종업원」 으로서 南支방면에 내지인1, 조선인53의 계54 (調17-18-2)
- 13 新竹, 11월중, 「군위안소」 로서 신분증명서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조선인20의 계20(調18-21-3)
- 20 高雄, 11월분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관계」 로서 南支방면에 조선인16, 본도인7의 계54(?) (調18-22-4)
- 23 在漢口香川縣天野部隊, 군위안소개설을 위해서 부녀50명 모집 (調查2-8)
1940. 1. 15 新竹, 12월중, 「군위안소手伝」 로서 신분증명서 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내지인1의 계1(調18-21-5)

형식에 의한 노무동원 시작

15 高雄, 12월분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관계」로서 南支방면에 내지인17, 조선인2, 본도인3의 계22 (調18-22-5)

17 台中, 12월중의 도항목적조사표중, 「위안소종업원」으로서 南支방면에 조선인11의 계11, 위안소경영로서 南支방면에 본도인1, 계1 (調17-18-3)

17 台東, 12월분도항목적조사표중, 「위안소종업원」으로서 南支방면에 累計2 (調19-23-1)

18 台北, 12월중, 「위안소관계」로서 신분증명서 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내지인9, 조선인2, 계11 (調17-17-5)

2.14 台東, 1월분도항목적조사표중, 「위안소종업원」으로서 南支방면에 累計2 (調19-23-2)

16 新竹, 1월중, 「군위안소종업원」으로서 신분증명서 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조선인2의 계2(調18-21-6)

19 高雄, 1월분 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관계」로서 南支방면에 조선인1, 본도인15의 계16 (調18-22-6)

24 台北, 1월중, 「위안소관계」로서 신분증명서 및 외국여권을 발급한 자, 南支방면에 내지인2, 조선인1, 계3 (調17-17-6)

26 台南, 1월중의 도항목적조사표중, 「위안부종업원」으로서 南支방면에 累計2 (調17-19)

3.

30

4. 中国漢口全市에 20개소의 娼区를 설정, 기녀檢査所4月16日 정식으로 설립完了, 桑戶公娼의 取締暫定規則를 정하고 영업허가 (調5-58)

9.19 支那事變地에서 위안시설을 고려 (調1-11)

10.16

11. 北支那派遣多田部隊, 性病환자 상대 여성 국적별 조사표: 조사인원5418명중, 조선인을 상대로 한자 2455명(45.31%) (調9-12)

12.10 第1病院支那事變第8回功績概見表, 위안부건강진단4월~11월 延인원수1995명 (調10-55)

1941. 2. 廣東地區의 일본인 위안소수3 (調20-57)

5.10 廣東, 4월분 입국자직업조사표중, 「軍酒保위안소」가 廣東 21, 海口2의 계23 (調21-28-1)

6.11 廣東, 5월분 입국자직업조사표중, 「軍酒保위안소」가 廣東 17, 海口2의 계19 (調21-28-2)

6.

28 日本軍 朝鮮總督府給務局에 2万人의 위안부를 募集하도록

조선전도에서 노무자원조사 실시
汪兆銘主席, 南京「國民政府」창립

조선에서 국민총력운동

조선노무협회 설립
關東軍特別演習動員決議

依頼 (年)

7. 7

21 廣東, 6월분 입국자직업조사표중, 「軍酒保위안소」가 廣東 7의 계7 (調21-28-3)

8. 9 廈門, 7월중의 입국자직업별조사표중 「위안소」가 廈門2 (調22-29-1)

12 廣東, 7월분 입국자직업조사표중, 「軍酒保위안소」가 廣東 5, 海口1의 계6 (調21-28-4)

18 台中, 7월중, 도항목적조사표중, 「위안소종업」으로서 南支방면에 조선인7의 계7 (調17-18-4)

25 高雄, 7월분 도항목적조사표중 「군위안소관계」로서 南支방면에 내지인15, 본도인5의 계20 (調18-22-7)

9. 5 廈門, 8월중의 입국자 직업별조사표중 「위안소」가 廈門2 (調22-29-2)

8 廣東, 8월분 입국자 직업조사표중, 「軍酒保위안소」가 廣東 6, 海口1의 계7 (調21-28-5)

27 台北, 7월중, 도항목적조사표중, 「위안소관계」로서 南支방면에 조선인9의 계9, 累計97 (調17-17-7)

9.

11.21

12. 8

10 海口, 11월분 조사표중 「위안소」로서 海口2의 계2, 「예기창기 작부기타」로서 海口8, 三匪3의 계11 (調23-31)

11 汕頭, 11월분 조사표중 「요리옥, 위안소」汕頭4의 계4 (調22-30-1)

16 廣東, 11월분 입국자 직업조사표중, 「軍酒保위안소」가 廣東12의 계12 (調21-28-6)

25

1942. 1. 2

14 南洋방면 점령지의 위안부로서 도항하는 자는 군의 증명서를 받도록 함 (調19-35)

17 廈門, 12월중의 입국자 직업별조사표중 「위안소」가 廈門1 (調22-29-3)

23

2.13

15

關東軍特種演習開始

陸海軍의 要請에 의한 강제연행도 시작
國民勤勞報國協力令(勅令) 일본, 對米英開戰

일본군, 香港점령
일본군, 마니라점령

일본군, 라바울점령
閣議決定「조선인노무자 사용에 관한 방책」에 의거하여「鮮人내지 이주 알선 요강」정해짐
일본군, 싱가포르점령

20 南方總軍의 보르네오行 위안士人50명 파견요구 (調13-51)
 3. 5 上記의件 인가 (調13-51)
 8
 12 香港占領地총독부, 花柳病증가 경향때문에 위안소를 한정지
 16 구에 集結하도록 계획 (調10-50)
 4. 1 汕頭, 3월분조사표중 「군위안소관계」 菴埠1의 계1
 4 (調22-30-2)
 11 廈門, 3월중의 입국자 직업별조사표중 「위안소」 가 廈門2
 (調22-29-4)
 20 廣東, 3월분 입국자 직업조사표중, 「軍酒保위안소」 가 廣
 東8, 香港14, 海口1의 계23 (調21-28-7)
 5. 12 廈門, 4월중의 입국자 직업별조사표중 「위안소」 가 廈門3
 (調22-29-5)
 19 廣東, 4월분 입국자 직업조사표중, 「軍酒保위안소」 가 廣
 東3, 香港3의 계6 (調22-28-8)
 6. 6 獨立守備步兵第35大隊, 위안소에 관한 規定 (調6-64)
 13 보르네오行특수위안부50명로서는不足하여20명追加(調13-52)
 18 「大東亞戰爭관계將兵의性病処置에 관한건 육군일반에통첩
 案」 陸密第2112号
 7. 16 廣東, 6월분 입국자 직업조사표중, 「軍酒保위안소」 가 廣
 東7, 香港5, 海口1의 계13 (調22-28-9)
 31 가가양市에 위안부4명 (調10-67)
 8. 7
 16 마수바대島警備隊, 군인俱樂部의 規定 (調4-19)
 24 제25군, 위안소에서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의, 또 장
 교위안소眞砂는 종업부의 監督不十分으로 인해 2일간 영업
 정지 (調4-22)
 10. 3 支那派遣軍, 副官会同實施의件, 피임구에 관하여(調10-25)
 5 第10獨立守備隊, 위안소使用日割表 (調6-65)
 13 廈門, 9월중의 입국자직업별조사표중 「위안소」 가 廈門2
 (調22-29-6)
 12. 31
 1943. 1. 在准陰창기檢梅成績表, 第17師團步兵第54連隊
 2. 14 가가양, 「하사관 및 병용으로 제3위안소를 개설」

조선노무협회에 의한
 官斡旋募集形態시작
 조선인의 「공출」
 일본군, 바다비아점령
 일본군, 랑궁점령
 台灣人 「志願」 制度
 미군, 가달카날上陸開始
 조선青年特別鍊成令公布
 일본군, 가달카날포기 결정

獨立守備步兵第35大隊第一中隊 「陣中日誌」
 7.
 8. 1
 14 「타크로반町, 위안소 1件, 위안부比人 9명」
 9.
 10.
 14
 11. 7 第3525部隊隊員, 위안소 以外에서는 解散을 禁止 (調4-6)
 1944. 1. 18 龍山管内, 요리영업관계의 雇女 (만16세이상) 들로 특별여
 자청년정신대결성, 17일결성식 (每)
 3. 19
 4. 5 軍屬志願, 명문여성, 學友○○명과 같이 (每)
 5. 14 산타쿠루즈환자療養所, 第16師團第2野戰病院, 위안부의 檢
 査를 嚴密히 하도록 (調9-14)
 25 伊江島에서 새로 위안소建築作業을 開始할 予定 (調3-30)
 27 伊江島위안소建築敷地의 整備에 87명 動員 (調3-30)
 5. 在廣東의 中山隊, 군인俱樂部利用規定, 部隊副官이 군인俱
 樂部の 業務를 監督 (調4-16)
 6. 19
 7. 7
 20 第3魚雷艇隊, 釧路市內의 해군지정식당및 유곽중 6채을 兵
 員위안소로 지정 (調20-23)
 8. 22
 23
 8.
 9. 17 9월20일에 營業을 開始하는 군인會館等, 3개소 (調4-35)
 25 군인會館 營業開始 (調4-36)
 10. 10
 20
 24
 25
 12. 24
 1945. 1. 9
 14 沖繩의 國頭支隊, 위안시설 增強을 위해 人원을 差出
 增強作業은 1월16일부터 약10일간의 예정 (調3-26)

海軍特別志願兵
 버마 「獨立」
 日本 차관회의에서 여자근로
 정신대 결성이 정해짐
 조선인學徒特別志願兵
 필리핀 「獨立」
 東京-閣議에서 18日, 여자
 정신대制度強化方策要綱決定
 마리아나沖海戰
 사이판島미군에게 돌아감
 學徒勤勞令 (勅令)
 여자정신근로령공포
 閣議決定 「半島人노무자
 의 이입에관한 건」 에 의
 해 國民徵用令의 일반징용
 을 조선에서도 실시
 沖繩, 那霸大空襲
 미군, 필리핀레이테島 상륙
 레이테沖海戰日本艦隊全滅
 海軍神風特攻隊出撃개시
 미空軍B29, 東京空襲개시
 미군, 루선島上陸

15	首里위안소設備作業을 실시 (調3-29)	
2.10	2.11에 開設하는 連絡所의 西方에「真部山위안소」(調3-27)	
3. 5		국민근로동원령 (勅令)
10		東京大空襲
13		大阪大空襲
19		名古屋大空襲
22		미군에 의해 硫黃島守備隊 全滅
27		일본군에 협력한 버마군, 일본군에 反逆攻擊開始
4. 1		미군 沖繩上陸開始
5. 2		랑궁陷落, 버마奪還됨
6.23		沖繩守備軍司令官自殺, 일본 군의 組織的抵抗끝남
8. 6		미군 広島에 原爆攻擊
9		미군 長崎에 原爆攻擊
12		關東軍司令部新京에서 通 化로 退避
15	조선 해방	
10.	沖繩에서 40명정도와 琉球諸島에서 110명의 위안부를 합류 시켜 帰国待機중 (占領当局의 報告)	
1946. 6.20	「南部세레베스지역의 壳淫시설調書」 (調8-2)	

備考: 調-日本政府「いわゆる従軍慰安婦の調査結果について」(頁-番号)

毎-『毎日新報』

新-『新京日日』

奉天-『奉天毎日』

滿-『滿洲日報』

鴨-『鴨江』

陣-『陣中日誌』

年-MBC작성 연표.